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연 구 진

윤태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재정 환경변화, 재정분권·주민참여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 현안·시책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객관 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지출 등 법정·의무성 지출증대에 따른 수지불균형, 지방채무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 검토를 통해 2017년 지방재정분석에 활용할 지표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2. 연구의 주요 내용

- □ 2017년 재정분석 중점 분석 방향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방재정 상태 및 운영 상황을 분석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예산과정에의 참여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석 지표를 검토
 -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재정분석결과에 보 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검토
 -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석 지표를 검토

□ 2017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도출

-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표 폐지 및 유사지표 통·폐합
- 유사지표 통·폐합 등을 통한 지표감축 추진
 - · (예)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 재정법령준수 항목으로 통합
- 일부 자치단체에만 적용되거나 지표의 안정성이 약한 지표 폐지 검토
 - (예) 실질채무비율 등
- 지방교부세 공유 지표 산식 검토
 - · (예) 세입효율성 지표, 세출효율성 지표(노력도 지표 산식 검토)
- 정부업무평가 정비(안) 반영 및 정부시책협조 유도를 위한 지표 도입
- 기금운용성과분석 지표, 일자리창출관련 지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표
-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매뉴얼(편람) 개발

3. 2017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의 마련

□ 기본방향

- 기존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재 검토를 하되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분석지표 및 지표별 비중을 원점에서 재검토
-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표 폐지 및 유사지표 통·폐합
-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되거나 매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표 폐 지 검토
- 중앙정부의 지침 및 평가기준과 일관성이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고, 타 평가 지표와 유사한 지표의 경우 산정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 □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기존 3개 분야(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체계를 유지하여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
 - 정량지표(재정건전성, 효율성)와 정성지표(재정책임성) 분야로 배치하여 구성
 - 재정건전성(가중치 합계 100%), 재정효율성(가중치 합계 100%)로 구성되어 있던 정량지표 가중치 체계를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가중치 합계 100%)로 조정
 - · 재정수지(17%), 채무(부채)관리(23%), 공기업(10%), 세입(29%), 세출(21%)
 - 건전성 지표 중 실질수지비율을 참고지표로 이동하고 광역자치단체만을 대 상으로 하던 실질채무비율을 관리채무비율에 통합
 - 효율성 관련 지표 중 자체세입비율(증감률)을 세분화하여 지방세수입비율 (증감률)과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로 구분
 - 효율성 관련 지표 중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표에 대해 평가 시 사회복 지보조와 함께 민간행사보조를 제외
 - 효율성 관련 지표 중 인건비절감노력도와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을 참고지표로 이동
 - 재정책임성 분야에서 재정법령준수 범위 및 재정공시노력도, 재정분석대응 도에 대한 점수 조정

□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의 특징

1) 지표체계 개선

- 정량지표 분야(건전성, 효율성) 정성지표 분야(재정책임성)으로 지표체계 유지
- 분야 :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재정책임성
- 지표 : 정량지표, 정성지표

2)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지표 개선

- O 신규 지표 도입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기금성과분석지표(참고지표, 신규예고지표)
- 일자리지표(참고지표, 신규예고지표)
- 주민참여예산제도 지표(참고지표, 신규예고지표)
- 지표 삭제 및 이동
- 실질수지비율(참고지표로 이동)
- 실질채무비율(관리채무비율로 통합)
- 자체세입비율(증감률)(지방세수입비율과 경상세외수입비율로 구분)
- 인건비절감노력도(참고지표로 이동)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참고지표로 이동)

3) 재정책임성 지표 개선·보완

- 재정법령준수 점수 부여 체계 개선(위반 건수 x -2점)
- 재정분석 대응도(-5점)
- 재정공시 노력도(+10점)

차 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제1장 서론	<u> </u>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5
1.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5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7
제2장 지병	y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분석 ······9
제1절	재정분석 개요11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11
2.	현행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11
3.	재정분석 제도운영 및 분석 절차 13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15
1.	지표 분류기준15
2.	재정분석 지표체계 16
제3절	제약요인 및 개선방향18
제3장 지병	낫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 19
제1절	건전성 지표의 검토21
1.	기본방향21
2	재전거저선 세브 지표 건토 ······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절 효율성 지표의 검토 33
1. 기본방향 33
2. 재정효율성 세부 지표 검토34
제3절 책임성 지표의 검토 47
1. 기본방향 47
2. 재정책임성 세부 지표 검토47
제4절 신규지표의 검토 51
1. 신규지표 검토 51
2. 신규지표 검토 결과 52
제5절 참고지표의 검토54
1. 참고지표 검토사항 54
2. 참고지표 검토결과 57
제4장 2017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59
제1절 2017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61
1. 2017년도 지표체계(안) 61
2. 2016년도와의 비교64
제2절 배점 및 기중치 조정 66
1. 분야별 배점 검토66
2. 지표별 가중치 검토6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부록】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안)	71
【부록】	2017년 지방재정분석 지표 배점	
	(가중치)	73
[부록]	지표별 정의표	74
[부록]	가중치 조정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시뮬레이션 1	48

표 차 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班 2-1>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2016년) 16
<班 2-2>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2016년) 16
<班 3-1>	재정 건전성 지표 검토사항 21
<班 3-2>	재정 효율성 지표 검토사항 33
<班 3-3>	재정 책임성 지표 검토사항47
<班 3-4>	참고지표 검토사항54
<班 3-5>	참고지표 검토결과 57
<班 4-1>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63
<班 4-2>	2016년도와 2017년도 지표체계 비교 65
<班 4-3>	지표별 기중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67
<班 4-4>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기중치 조정(안)68
<班 4-5>	2016년 지방재정분석 대비 2017년 지방재정부선 지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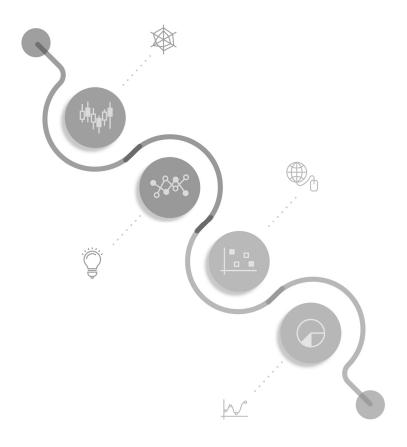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
<그림	2-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1	4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절차 1	4
<그림	4-1>	2017년 재정부석 지표체계(안) 6	í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면구의 배경 및 목적

- □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환경변화, 재정분권·주민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 현안·시책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지출 등 법정·의무성 지출 증대에 따른 수지불균형, 지방채무 확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이에 다른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전반적인 동향 및 현안 이슈 검토
 - 일자리 창출 관련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현안 이슈 관련 검토
 - ·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지표 검토
 -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를 참고지표로 반영 후 신규지표로 예고
 -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 재량권 확대에 대한 책임성 확보 강화를 대비한 지표 도입 검토
 -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참고지표로 반영 후 2018년도 재정분석 신규지표로 예고
 - 정부업무평가 정비(안) 및 정부시책 협조 유도를 위한 지표 도입
 - · 기금운용성과분석 지표 중 대표지표를 참고지표로 반영 후 2018년도 재정분석 신규지표로 예고
- □ 재정운영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를 통해 재정분석 지표 보완·개발 및 평가 방법 개선으로 2017년도 지방재정 분석에 활용할 분석체계 마련

- 현행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문제점, 제약요인에 대한 보완·개선 및 제도 간 연계강화로 행정적 효율성 제고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으로 구분되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체계 개선 검토
- 유사·중복성이 강한 지표 간 통·폐합 등을 통한 지표감축 추진
 - · 본 지표와 유사·중복이 강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참고지표 개선
- 지표별 중요도를 검토하여 비중 재설정 및 재정진단단체 선정과 관련된 지표는 비중을 높게 설정하는 방안 추진
- 일부 자치단체에만 적용되거나 지표의 안정성이 약한 지표 폐지 추진
- 재정분석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표 폐지 검토
- 행정자치부 실시 자치단체 평가 지표 중 유사한 지표에 대한 산정방식 검토
 - ·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공유 지표 산식 검토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 비율, 노력도 지표)
- 재정책임성 분야에 대한 지표체계 및 점수 부여 방식 개선
- 준법성 지표(재정법령준수) 범위 검토
 -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재정법령준수 지표로 통합 검토
 -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재정법령준수 지표로 통합 검토
- 2016년 예고지표 지표화 여부 검토 및 재정분석 워크숍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표 세부개선 추진
- 2014년 이후 재정분석 결과, 등급 정보의 전체 공개 시행 등에 따라 점수 산정방식 보완 및 정량화, 가중치 조정 등 종합평가 및 실효성 강화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지방재정 환경변화 및 현안재정 이슈와 관련하여 재정분석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
- 2017년도 재정분석에 활용할 분석 지표체계 마련
-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 지표 보완·개선
 - 자치단체 실정 등 지표 적실성 강화
- 유사지표 통폐합을 통한 지표체계 실효성 확보
- 책임성 지표(정성지표) 점수부여 방식 보완·개선
- 신규지표 검토 및 지표와 작업
- 건전성, 효율성 분야 체계에 대한 보완·개선

2. 연구방법

- O 문헌연구
-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 법령, 제도 연구, 선행연구 검토
- 재정분석기법, 지표평가방법 등 검토
- 추세모니터링, 종합지수화 등 검토
- 분석지표 보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외부전문가 워크숍, 간담회, 자문회의 개최
- 이슈별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
 - * 재정전문가, 계량·통계전문가, 회계사, 공무원 참여
- 통계분석, 현장조사 등 실증적 분석
- 지방재정분석 관련 실무자 면담 및 현지조사에 의한 정책방안 타당성 검토
- 분석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등

<그림 1-1> 연구 흐름도

이론 고찰	⇒ 실태 분 석		\Rightarrow			\Rightarrow		개선방안
이론적 검토		지표	현황진단	분석체계 및 분석지표				재정분석 기본방향 재정분석 지표(안)
↓	•	점검/실증	통계분석	기초통계량 순위변동성 가중치시산		>	정 책 대 안	지표분석방법 및 통계, 시뮬레이션
현황 분석		실증분석	전문가 의견	정책대안 타당성 자문			_	가중치 조정 및 평가방식 검토
	_					•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 2017년 재정분석 중점 분석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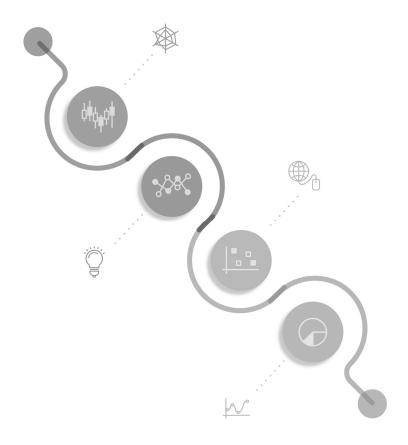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방재정 상태 및 운영 상황을 분석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예산과정에의 참여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석 지표를 검토
- 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재정분석결과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검토
-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부석 지표를 검토

□ 2017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도출

-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표 폐지 및 유사지표 통·폐합
- 유사지표 통·폐합 등을 통한 지표감축 추진
 - · (예)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 재정법령준수 항목으로 통합
- 일부 자치단체에만 적용되거나 지표의 안정성이 약한 지표 폐지 검토
 - (예) 실질채무비율 등
- 지방교부세 공유 지표 산식 검토
 - (예) 세입효율성 지표, 세출효율성 지표(노력도 지표 산식 검토)
- 정부업무평가 정비(안) 반영 및 정부시책협조 유도를 위한 지표 도입
- 기금운용성과분석 지표, 일자리창출관련 지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표
-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매뉴얼(편람) 개발

제2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분석

제1절 재정분석 개요 • 제2절 재정분석의 지표체계 제3절 제약요인 및 개선방향



제 2 장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분석

제1절 기재정분석 개요

1. 현행 제도 목적과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의 종합적 점검시스템
-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

2. 현행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O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65조

◇ 지방재정법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u> 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개정일 2014.11.19.>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u>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함 수 있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최종 개정일 2014.11.19.>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 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 1. 「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 2. 「지방자치법」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 <u>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u>
-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재정분석 제도운영 및 분석 절차

-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단체에 정부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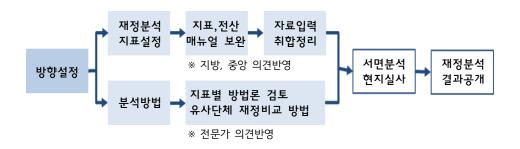
○ 재정분석 결과가 미흡한 단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유도

<그림 2-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O 분석 절차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절차



제2절 기재정분석의 지표체계

1. 지표 분류기준

- □ (지표구성) 지표는 분석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건전성·효율성・ 책임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
 - O 각 분야별로 분석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요인을 체계화
- ☐ (재정건전성)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입각한 재정상태의 건전성 여부를 재정수지, 채무관리, 공기업 관점에서 지표 구성
 - O 재정수지 관점: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 O 채무관리 관점 : 관리채무규모, 채무상환능력
 - 공기업 관점 : 공기업부채, 공기업경영실적
- □ (재정효율성)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관리효율, 세출관리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O 세입관리 : 세입 조달 능력, 체납액관리 등
 - 세출관리 : 지방보조금, 출자출연전출금, 인건비 절감노력 등
- □ (재정책임성) 지자체 재정의 준법운영, 재정공시노력 등을 위한 것으로 페널티 지표와 인센티브 지표로 구성
 - 페널티
 - 재정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등
 - O 인센티브
 - 재정공시노력도

2. 재정분석 지표체계

- 재정 건전성, 효율성과 책임성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광역 28개, 기초 27개의 핵심지표 선정
- 지표의 중요도와 변별력, 정보 특성 등 고려
- 건전성 광역 9개(기초 8개), 효율성 14개, 책임성 5개
 - ※ 이와 별도로 재정통계 관리 목적의 참고지표 21개 선정 (기존 관리지표 20개+신규 추가 1개 지표)

<표 2-1> 지방재정분석 지표구성 및 배점(2016년)

분 야	세부지표(광역28, 기초27개)	배점 (1,000점)
① 건전성 (9개 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재정수지 3개 지표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채무관리 4개지표 ■공기업부채 등 공기업관리 2개 지표	500
② 효율성 (14개 지표)	■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등 세입효율 6개 지표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등 세출효율 8개 지표	500 ※보통교부세 연계
③ 책임성 (5개 지표)	■ 재정법령준수, 재정공시노력도 등 5개 지표	가/감점 지표

<표 2-2>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2016년)

1차분류	2차분류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수지관리 (35%)	통합재정수지비율	15%
		실질수지비율	10%
	(3370)	경상수지비율	10%
건전성 9개 (500점)	채무(부채)관리 (45%)	관리채무비율	18%(광역) 27%(기초)
		실질채무비율	9%(광역)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4%
		통합유동부채비율	4%
	공기업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2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1차분류	2차분류	재정분석지표	가중치
효율성 14개 (500점)	세입효율 (43%)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탄력세율적용노력도	6%
	세출효율 (57%)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0%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8%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8%
		인건비 절감노력도	7%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7%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
책임성 5개 (가/감점)	법령준수	재정법령 준수	-45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투명성	재정공시 노력도	+15점
	대응성	재정분석 대응도	-10점

제3절 기제약요인 및 개선방향

- 기존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하되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분석지표 및 지표별 비중을 원점에서 재검토
-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표 폐지 및 유사지표 통·폐합
-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되거나 매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표 폐지 검토
- 중앙정부의 지침 및 평가기준과 일관성이 있도록 지표를 보완하고, 타 평가 지표와 유사한 지표의 경우 산정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제1절 건전성 지표의 검토 세2절 효율성 지표의 검토 제3절 책임성 지표의 검토 제4절 신규지표의 검토 제5절 참고지표의 검토



제3장

지방재정분석 지표 보완·개선

제1절 건전성 지표의 검토

1. 기본방향

- □ 건전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지표체계 단순화
- □ 유사·중복성이 강한 지표에 대한 폐지 및 예고지표 신규 지표화
 - 실질수지비율, 실질채무비율 폐지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의 신규 지표화 여부
- □ 공기업부채 지표 보완 검토

<표 3-1> 재정 건전성 지표 검토사항

측정관점	분석지표	특성	2017년 검토사항	
	통합재정수지비율	국제기준		
재정수지	실질수지비율		지표 유지 여부 검토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관리채무비율			
채무	실질채무비율	광역자치단체	관리채무비율로의 통합 여부 검토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복식부기		
(부채관리)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부채	지표 유지 검토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2016년 참고지표(예고지표) 신규 지표화 검토	
공기업 관점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	시군구 시설관리공단을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공기업	제외하는 방안 검토	

2. 재정건전성 세부 지표 검토

- 1) 유사·중복 지표 통합을 통한 건전성 지표 단순화
- 가, 재정수지 지표 단순화
- □ (검토사항) 재정수지를 대표하는 대표지표를 선정하는 방안
 - 통합재정수지(국제기준지표), 경상수지(재정진단 연계지표)
 - 실질수지(자치단체 일반재원 결산액 대비 이월금 및 보조금을 제외한 실질 수지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표의 유지 또는 통합 검토 ※ (논거1)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수지의 산출방식 비교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 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 지출
 - = (세입+융자회수) (세출+융자지출)
 - = 세입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규모 \times 100
 - (통합재정수입) <u>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u> 수수한 재정수입 규모
 -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 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지금 지출)
 -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액 일반재원결산액 × 100(%)

※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수지의 경우 지표산출을 위한 회계범위만이 다를 뿐 지표 산출 방식이 유사
-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통합회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금)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 실질수지의 경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함 ※ (논거 2) 재정수지 지표로서의 실질수지의 활용성
- 재정수지 지표의 경우 자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결과(흑자 또는 적자)를 보기 위한 지표이나.
- 실질수지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입-세출-이월금 및 보조금집행잔액의 산출결과인 흑·적자 규모가 실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라고 말하기 어려움
- O 또한 실질수지 산출 공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 실질수지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 및 보조금집행잔액
 - = 세계잉여금-이월금 및 보조금집행잔액
 - =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즉, 실질수지는 일반정부부문(공기업 및 기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일반 회계, 기타특별회계 부문)의 재정운영 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됨
-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많이 발행해야 좋은 건지, 적게 발생해야 좋은 건지에 대한 정리된 논의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국제기준 통합재정수지 산출에서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도 두 가지 사유로 발생하며 각각에 대해서도 긍정, 부정의 논의가 존재
- □ 결산 결과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 결산 결과 세출액이 당초예산보다 감소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 예산집행에 소홀하여 시업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물론,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예산이 절약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도 있음
 - 다시 말하면, 위의 경우처럼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나 실제 결산상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사유별, 유형별로 구분·산출되지 아니함
- □ 따라서 자치단체의 단체별보고서 작성 시 산출된 실질수지지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
 - 예산 및 시업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함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실질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 지표 간 상관성 검토

전국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통합재정수지	1		
실질수지	.398**	1	
경상수지	101	.030	1

시도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통합재정수지	1		
실질수지	.862**	1	
경상수지	-0.454	586*	1

시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통합재정수지	1		
실질수지	.300**	1	
경상수지	0.007	-0.19	1

군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통합재정수지	1		
실질수지	.426**	1	
경상수지	236*	281*	1

자치구	통합재정수지	실질수지	경상수지
통합재정수지	1		
실질수지	.526**	1	
경상수지	312**	-0.009	1

- ·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수지 간 상관관계가 <u>전국(0.398)</u>, 시도(0.862), 시(0.300), <u>군(0.426)</u>, 자치구(0.526)로 비교적 높은 편임. 특히 시도의 경우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편임
- ☐ (검토결과) 지표 간 상관관계와 산출방식의 유사성을 유사지표 통폐합의 근거로 제시하여 실질수지비율을 참고지표로 이동하는 검토결과를 도출
 - 재정집행의 계획성과 관련되는 지표이며 실질수지비율이 지방재정분석에서 갖는 의미는 낮은 편에 해당
 -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과 관련된 지표이며, 세입에 따라 변동 폭이 커 연도별, 상황별 편차가 매우 높은 편임
 - 실질수지비율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한 가점 부여가 그 취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른 지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보조지표적 성격이 강하며,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재정 분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표를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O 이에 실질수지비율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재정수지비율이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흑·적자를 보기 위한 것이므로 통합 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운영 결과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를 본 지표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 일반정부부문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측정하는 실질수지의 경우 지표산출의 의미는 있으나 평가 및 권고의 의미가 없으므로 참고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나. 채무(부채) 지표의 단순화

- □ (검토사항)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 유지,
 실질채무비율 → 관리채무비율로 통합
 - 실질채무비율 폐지 및 관리채무비율로의 통합
 -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산출하는 지표로 관리채무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중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본청에서 사용하는 융자금만을 포함하여 산출
 - (통합검토사유) 광역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이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가적 관점에서 일부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융자금으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위해 도입된 지표임. 그러나 재정분석이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역시 채무이므로 이를 제외한 지표 산출의 의의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지표 간 상관관계 검토)

시도	관리채무비율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비율	1	
실질채무비율	.961**	1

- (지표 간 순위 검토)

순위	단체명	관리채무	순위	단체명	실질채무
1	세종 본청	5.43%	1	세종 본청	5.43%
2	경남 본청	6.82%	2	경남 본청	5.60%
3	경북 본청	12.10%	3	경북 본청	7.03%
4	전북 본청	12.95%	4	전북 본청	7.39%
5	충남 본청	13.48%	5	충남 본청	8.34%
6	제주 본청	14.21%	6	충북 본청	10.19%
7	전남 본청	14.32%	7	경기 본청	10.90%
8	충북 본청	15.13%	8	전남 본청	11.34%
9	경기 본청	15.47%	9	강원 본청	11.52%
10	강원 본청	15.53%	10	제주 본청	14.21%
11	서울 본청	17.83%	11	서울 본청	17.83%
12	대전 본청	18.16%	12	대전 본청	17.88%
13	울산 본청	18.17%	13	울산 본청	18.17%
14	대구 본청	21.44%	14	대구 본청	21.44%
15	부산 본청	22.65%	15	부산 본청	22.65%
16	광주 본청	25.09%	16	광주 본청	25.09%
17	인천 본청	33.67%	17	인천 본청	33.47%

- □ (검토결과)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유지,
 실질채무비율 → 관리채무비율로 통합
 -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지표(관리채무, 실질채무)의 평가 시 가중치 및 평가요소 조정결과 특·광역시의 경우 등급 및 순위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도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순위변화가 나타남
 - 다만 등급변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점수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지표의 경우 관리채무비율로 산출하되 평가 시 융자금 제외 채무(실질채무)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지표의 평가 시 가중치 및 평가요소 조정결과로 인한 순위 및 등급변화가 거의 없으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서 관리채무를 채무 대표지표로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채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관리 채무비율로 일원화하자는 의견 → 관리채무비율로 일원화

2) 예고지표에 대한 신규 지표화

- □ (검토사항)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의 신규 지표화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세입결산액 대비 현금지급의무가 있는 금융부채의 비중을 측정하여 자치단체 부채수준을 관리

결산대비금융부채 = 지방채발행진액 + 미지급금(BTL지급액,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등) + 채무부담행위(발생) + 보증채무부담(확정액)

- 부채감축 등 관리 가능성을 고려, 자금지출의무인 "금융부채"로 범위를 한정 하여 지자체의 부채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도입
- 재정분석 지표에 처음으로 적용됨을 감안, 기존 지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고지표에 우선 반영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재정분석 지표로 전환을 검토
- (검토방법)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 재정상태표의 금융부채 항목 금액 확인
- (부채지표 간 기술통계량 비교)

결산대비금 융 부채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13.19%	24.53%	14.85%	9.49%	2.75%	0.78%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59.73%	123.09%	71.05%	47.17%	24.53%	22.56%

통합유동부채비율					
전국평균	특광역시 평균	도평균	시평균	군평균	자치구평균
27.97%	28.94%	31.91%	15.43%	8.94%	9.09%

- (부채지표 간 상관관계)

전국	환금자산대비부채	통합유동부채	결산대비금융부채
환금자산대비부채	1		
통합유동부채	.467**	1	
결산대비금융부채	.680**	.406**	1

시도	환금자산대비부채	통합유동부채	결산대비금융부채
환금자산대비부채	1		
통합유동부채	.116	1	
결산대비금융부채	.889**	.216	1

시	환금자산대비부채	통합유동부채	결산대비금융부채
환금자산대비부채	1		
통합유동부채	.333**	1	
결산대비금융부채	.480**	.283*	1

군	환금자산대비부채	통합유동부채	결산대비금융부채
환금자산대비부채	1		
통합유동부채	.370**	1	
결산대비금융부채	.860**	.216	1

자치구	환금자산대비부채	통합유동부채	결산대비금융부채
환금자산대비부채	1		
통합유동부채	.782**	1	
결산대비금융부채	.618**	.348**	1

- (부채지표 간 순위 비교)

단체명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세종 본청	5.43% (1)	20.29% (1)	9.11% (1)
경남 본청	10.31% (2)	63.51% (4)	33.87% (12)
경북 본청	12.10% (3)	52.78% (2)	22.05% (5)
전북 본청	12.95% (4)	82.96% (10)	28.23% (10)
충남 본청	13.48% (5)	63.76% (5)	27.82% (7)
제주 본청	14.21% (6)	80.42% (9)	15.62% (2)
전남 본청	14.32% (7)	71.76% (7)	20.02% (4)
충북 본청	15.13% (8)	92.88% (12)	37.00% (13)
경기 본청	16.48% (9)	69.17% (6)	41.86% (15)
서울 본청	17.83% (10)	105.19% (13)	55.67% (16)
대전 본청	18.16% (11)	85.23% (11)	17.19% (3)
울산 본청	18.17% (12)	80.20% (8)	27.88% (8)
대구 본청	23.45% (13)	137.56% (14)	37.01% (14)
강원 본청	24.67% (14)	62.20% (3)	60.72% (17)
부산 본청	35.23% (15)	214.96% (17)	27.90% (9)
인천 본청	37.49% (16)	177.58% (16)	32.70% (11)
광주 본청	40.45% (17)	163.70% (15)	24.05% (6)
경기 과천시	0.00% (1)	7.01% (4)	2.45% (4)
경기 여주시	0.02% (2)	6.68% (3)	2.44% (3)
경남 밀양시	0.25% (3)	6.20% (1)	3.63% (7)
경기 고양시	0.62% (4)	15.68% (14)	12.01% (44)
전남 광양시	0.97% (5)	6.45% (2)	1.88% (1)
충남 계룡시	20.51% (71)	56.00% (47)	8.40% (29)
전북 익산시	22.36% (72)	76.27% (61)	12.25% (46)
강원 태백시	28.55% (73)	98.91% (72)	175.45% (75)
경기 용인시	76.56% (74)	67.12% (57)	37.53% (70)
경남 김해시	87.16% (75)	103.63% (73)	22.43% (65)
대구 달성군	0.00% (1)	3.99% (2)	1.86% (2
울산 울주군	0.00% (2)	4.45% (4)	2.31% (4)
충북 단양군	0.00% (3)	8.66% (23)	3.11% (10)
충남 태안군	0.00% (4)	7.48% (17)	5.47% (34)

단체명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전북 무주군	0.00% (5)	5.57% (9)	3.03% (9)
충북 진천군	8.06% (78)	95.79% (81)	33.12% (80)
충북 보은군	8.24% (79)	54.17% (74)	5.94% (39)
충남 홍성군	8.54% (80)	74.04% (78)	14.63% (73)
전남 강진군	10.22% (81)	90.43% (80)	10.16% (63)
경북 칠곡군	11.44% (82)	115.50% (82)	19.31% (76)
서울 종로구	0.00% (1)	11.65% (12)	4.89% (18)
서울 중구	0.00% (1)	12.73% (15)	6.03% (25)
서울 용산구	0.00% (1)	12.55% (14)	6.94% (27)
서울 성동구	0.00% (1)	29.26% (52)	11.88% (59)
서울 광진구	0.00% (1)	19.78% (33)	11.61% (56)
광주 서구	3.45% (65)	35.97% (65)	10.23% (49)
인천 서구	3.53% (66)	20.76% (37)	5.19% (19)
대전 동구	5.77% (67)	94.57% (69)	48.10% (69)
인천 부평구	6.14% (68)	62.02% (68)	10.28% (50)
서울 강남구	6.30% (69)	16.59% (25)	3.43% (5)

- □ (검토결과)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은 참고지표, 통합유동부채비율은 본 지표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결정
 -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을 본 지표로 할 경우, 지표값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지표화가 가능함
 - 다만, 통합유동부채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의 두 부채 지표와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의 관계를 확인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통합유동부채비율은 포괄하는 범위는 넓어졌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부채만을 분석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바라는데 반해, 연구자 및 학계에서는 이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을 본 지표, 결산대비금융 부채비율은 참고지표로 유지하는 것으로 함

3) 공기업 관련 지표 검토

- ☐ (검토사항) 공기업 관점 지표인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지표 에서 시군구 시설관리공단을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자치단체 의견)
 -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주로 공공시설 위탁·관리 기능을 담당, 자체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부채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
 - (2016년도 공단포함 사유) 공단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나 부채 발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기업 지표에서 공단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기존 공단제외 사유)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으로 주로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대행사업비로 운영되어 자체이익을 창출하지는 않으며, 부채의 경우도 일부 미지급금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
- ☐ (검토결과) 공기업부채비율의 경우 공단을 포함하는데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공단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
 - 공기업의 범위에 공단이 되기 때문에 논의의 흐름과 용어상의 의미를 반영 하여 공단을 공기업부채비율 산식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표의 왜곡이 없고, 공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공단을 공기관련지표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제2절 효율성 지표의 검토

1. 기본방향

-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평가 지표 중 유사한 지표에 대한 산정방식 연계강화 여부
 - 세입효율성 지표(지방세징수율, 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비율, 증감률, 탄력 세율적용노력도)
- □ 지표의 안정성이 약한 지표 및 특정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 대한 폐지
- □ 재정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지표 산정 방식 검토

<표 3-2> 재정 효율성 지표 검토사항

측정관점	분석지표	특성	2017년 검토사항
7021	10. 자체세입비율 (비율증감률)	7.0	재정건전성 지표 또는 참고지표로 이동 검토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보통교부세	
세입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보통교부세	
효율성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공식과의 연계강화 여부 검토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보통교부세	
	15.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보통교부세	
יון ב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민간행사보조금 제외 검토 - 행사축제경비비율과의 중복평가 문제
세출 효율성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상대평가 제외에 대한 자치단체 요구 - 분석은 하되 평가 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참고지표로 옮기는 방안 검토

측정관점	분석지표	특성	2017년 검토사항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복식부기	대도시, 도서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자본 시설유지에 소모되는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 -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기 힘든 지표
	19. 인건비 절감노력도	보통교부세	지표명 변경 및 참고지표 이동 검토
	20.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보통교부세	기준경비 범위 검토 (25% 증액범위)
	2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보통교부세	
	22. 행사축제경비비율 (비율증감률)	보통교부세	제외대상 행사축제기준 적용 어려움 상대평가 적용 부적합 -참고지표 전환 검토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지표유지 여부 검토

2. 재정효율성 세부 지표 검토

- 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지표 검토
- ☐ (검토사항) 재정분석 활용 시 법정출자출연에 대한 매칭부분을 제외하는 방안과 보다 객관적인 지표 생산 및 분석을 위해 참고지표로 이동하는 방안
 -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법정전출금만을 부담하고 있어 자치단체 재량에 의한 출자출연전출금의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
 - 국가 출자출연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칭 출자출연으로 인해 일부 자치 단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제시
- □ (검토결과) 기본적으로 출자출연을 억제해달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지표의 취지가 있으므로 기존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지표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출자출연전출금을 억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현행유지가 바람직

- 매칭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은 적절치 않음(자체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음)
- 2)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및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 □ (검토사항) 지방보조금비율 지표 중 '민간행사보조'와 행사축제경비비율 측정 지표의 중복문제 및 행사축제경비비율의 지표 안정성 여부
 - 국가 인정 행사축제에 대해 제외를 해주고 있다 보니 상대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의 국가인정 행사축제에 대한 범위 확대가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
 - 기존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인정 대상 축제에서 외교부, 행정자치부 인정 축제, 시도 시책 행사축제 등으로 제외 대상 축제가 확대되고 있어 지나치게 평가 위주 지표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
 -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축제로 인한 기저효과가 심한 지표로 지표의 안정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
 - 중복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 민간행사보조 항목을 지방보조금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 행사축제경비비율을 참고지표로 이동하는 방안
 - 2017년부터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운영함에 따라 본 지표 제외를 검토
- □ (검토결과) 평가 시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외, 인정 축제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여
 - 인정 축제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행자부가 정해서 내려주는 방안을 추진
 - 2016년도 결산은 현행 유지토록 하고, 행사축제경비 기준액이 도입되는 2017년도 결산부터 지표변경을 고려(예: 기준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절감도)
 - 지방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지표 산출에는 포함하되 사회복지 보조와 같이 평가 시 제외하는 방향 추진

3)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 (검토사항)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의 경비 기준액을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25% 범위 내 자율조정 가능)
- □ (검토결과) 현행 기준액 200만원 기준액 유지
 - e-호조에서 기초자료를 입력할 때 200만원~25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금액 입력은 시스템상 입력이 불가하게 만들고, 예산담당 실무자들이 지방의회 정족수만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지방의회 의원수는 의원의 보궐선거, 사망 등의 이유로 항상 일정한 인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그해 평균 의원수를 기준으로 기준경비액을 산정

4)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조직분석·진단) 제5항 제4호 및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서는 민간 위탁을 조직효율화 요소로 검토하고 있어 재정분석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
 - 민간위탁금 산정 시 국가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여부가 구분되지 않아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아 민간위탁금이 높은 자치단체가 재정분석에서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시
 - 다만,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문제(보조금과 위탁금을 혼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비,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함에 따라 지방보조금비율이 하락한 사례가 발생)방지 및 2016년 신규도입 지표임을 감안하여 지표유지 검토

□ (검토결과) 지표 유지

- 복지관 운영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위탁대상 업체가 제한적 이어서 매년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며 장기간 한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호봉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하고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한 경비 절감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 지는 사례들이 있음
- 또한 행사축제경비를 민간위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현행 지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

5)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지표 검토

- □ (검토사항) 재정효율성 측정 적합도에 대한 검토
 - 2010년 재정분석에서 처음 도입된 지표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기반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지표로 재정효율성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
 - 재정분석결과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2013년 재정 분석에서 재정효율성 지표로 이동하였음
 -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비율과의 중복 측정문제 제기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자체세입비율	1		
지방세징수율	0.316	1	
경상세외수입비율	0.528	0.360	1

- □ (검토결과) 자체세입비율을 지방세수입비율(신규지표)과 경상세외수입비율 (기존지표)로 세분화
 - 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해 개선되기 어려운 지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효율성 분석·평가 지표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지표의 경우 자치단체에 대해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 자세세입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짐

○ 자체세입비율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경상세외수입을 포괄하는 지표로서 지방세수입비율과 경상세외수입비율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수입비율 = (3년 평균 지방세 징수액 / 세입결산액) X 100 지방세수입증감률 = (금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 징수액 - 전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 징수액) / 전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 징수액

7)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에 대한 검토

- □ (검토사항) 수도권 및 대도시 위치 기초자치단체,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유형고정자산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
 -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기 힘든 지표라는 의견이 제시
 -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결산에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 또한, 상향지표인지 하향지표인지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가령 다리, 교량 등의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시민 안전과 관련이 있어 일정 부분은 지출해야하는데, 하향지표로 둘 경우 지자체 단체장들이 유지관리비를 되도록 줄이려고만 할 것
 - 원래 도서지역, 대도시 지역은 시설유지관리비가 높다는 것이 인지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시설유지관리비를 관리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목적에 부합하며 적적하다는 의견이 다수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전국 평균	5.08%	4.05%
특광역시 평균	3.88%	17.09%
도 평균	4.77%	-4.43%
시 평균	5.38%	8.75%
군 평균	5.87%	13.03%
자치구 평균	6.37%	10.87%

단체명	자본시설유지 관리비비율	단체명	증감률
전남 완도군	21.55%	부산 서구	139.73%
대전 유성구	16.75%	부산 사상구	79.54%
전남 신안군	13.92%	광주 본청	77.97%
전남 담양군	13.51%	세종 본청	69.37%
인천 옹진군	13.02%	부산 연제구	67.49%
부산 사하구	12.90%	전남 완도군	65.28%
부산 사상구	11.52%	강원 철원군	65.02%
경남 합천군	11.34%	대전 중구	63.99%
경기 여주시	11.31%	부산 기장군	63.79%
충남 공주시	10.93%	경남 함안군	59.07%
경남 하동군	10.92%	광주 서구	55.96%
광주 동구	10.84%	전북 완주군	53.09%
충남 홍성군	10.82%	경기 연천군	50.77%
울산 중구	10.51%	부산 남구	50.34%
부산 강서구	10.31%	강원 양구군	50.19%
전남 함평군	10.15%	대구 남구	46.75%
경기 수원시	10.02%	울산 울주군	46.41%

- □ (검토결과) 대도시 위치 기초자치단체, 도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유형고정 자산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기 힘든 지표라는 의견에 따라 참고지표로 이동
- 8) 보통교부세 연계지표에 대한 산식 검토
- ☐ (검토사항) 보통교부세 연계지표의 산정방식을 교부세과에서 산정하는 지방 교부세 산정방식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등 비 증감률 (절감노력도 및 제고율) 지표에 대한 증감률 지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실사단에서 제시

- 재정분석 효율성 분야에서는 세입효율성의 경우 자치단체의 세입현황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체납액 및 경상세외수입의 현황(비율)과 개선정도(증감률)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출효율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세출의 규모, 비율을 측정, 분석함으로써 세출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둠
- 반면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경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효율 및 세출 효율에 있어 자구노력 즉, 개선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활용하는데 중점을 둠
-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경우 주로 노력도 및 제고율 중심으로 구성 되며, 재정분석의 경우 주로 비율 및 증감률 중심으로 구성
- 이상의 특성을 감안한 지표의 산식 구성에 대해 검토

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재정분석 산식	대상회계	비중	속성
11-1. 지방세징수율(60%)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11-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40%)=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8%	A
▶다만, 2년연속 지방세징수율이 98%를 넘는 경우, 제고율 1이 넘는 자치단체들의 평균점을 부여			

- □ 지방교부세 산식
 - 지방교부세(지방세징수율 제고) 산정방식과 통일 필요 (재정분석 워크숍 시 의견)
- ① (전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times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액 \times 180%
- ② (전전년도 동종 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 상위 1/2단체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및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
 - · 수입에는 ①+②를 반영. 다만 ②는 불이익은 없음(인센티브만 반영)

②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재정분석 산식	대상회계	비중	속성
12-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60%) 2015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5년도 세입결산액 × 100(%) 12-2. 지방세체납액증감률(40%) (2015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4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 2015년 지방세 체납누계액 = = 2015년 미수납액 - 2015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2014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 다음연도 이월액 - 2014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연도 이월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4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일반회계	7%	•

- □ 지방교부세 산식
 - 지방교부세(지방세 체납액 축소) 산정방식과 통일 필요

(전전년도 지방세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지방세 체납 누계액) × 180%

- · 지방세 징수액 차감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 제외
- · 주행분 자동차세 미징수액 제외

③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재정분석 산식	대상회계	비중	속성
13-1. 경상세외수입비율(60%)			
2015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2015년도 세입결산액 × 100(%)			
13-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40%)	일반회계	7%	
(2015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교 단위/개	/ / 0	_
- 2014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2014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100(%)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 □ 지방교부세 산식
 - 지방교부세(경상 세외수입 확충) 산정방식과 통일 필요
 - 전전년도 과거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전전년도 기준 과거 (1 전전년도 과거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평균 징수액×150%
 - ·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하되, 이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

④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산식	대상회계	비중	속성
14-1.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60%)			
2015년 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5년도 세입결산액 × 100(%)			
14-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40%)			
(2015년도 말 체납누계액 - 2014년도 말 체납누계액)	일반회계	7%	▼
2014년도 말 체납누계액 × 100(%)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4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 지방교부세 산식

○ 지방교부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산정방식과 통일 필요

(전전년도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전전전년도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 180%

- · 일반회계 세외수입 대상
- ㆍ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 제외

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재정분석 산식	대상회계	비중	속성
2015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2015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일반회계	6%	A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 지방교부세 산식

○ 지방교부세(탄력세율 적용노력) 산정방식과 통일 필요 (재정분석 워크숍 시 의견)

[주민세 개인균등분]

 ${({\rm TOTELSTATE})+({\rm TOTELSTATE})+({$

[지역자원시설세]

(전전년도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전전년도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 (검토결과)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경우 주로 노력도 및 제고율 중심으로 구성되며, 재정분석의 경우 주로 비율 및 증감률 중심으로 구성)
 - 재정분석 효율성 분야에서는 세입효율성의 경우 자치단체의 세입현황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체납액 및 경상세외수입의 현황(비율)과 개선정도(증감률)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출효율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세출의 규모, 비율을 측정, 분석함으로써 세출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분석 하는데 중점을 둠
 - 반면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경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효율 및 세출 효율에 있어 자구노력 즉, 개선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활용하는데 중점을 둠
 - 노력도 관련 지표의 경우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산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
 - O '보통교부세 연계'를 '보통교부세 공유'으로 변경

현행 산식 = 1-(결산액/기준액)

이이시

인건비 결산액: 980,692,717,135원 총액인건비기준액: 954,544,787,000원

인건비절감노력도 = 1-(980,692,717,135/954,544,787,000)= -0,0274

→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결산액이 기준액보다 많음을 의미. <u>그러나 얼마나</u> 더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해 지표값이 주는 의미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시

이이시

인건비 결산액: 87,609,802,030원 총액인건비기준액: 99,842,859,000원

인건비절감노력도 = 1-(87,609,802,030/99,842,859,000)= 0.1225

→ 정(+)의 값이 나올 경우 결산액이 기준액보다 적음을 의미

(변경) (결산액/기준액) * 100

이이시

(980,692,717,135/954,544,787,000)*100 = 102.74%

→ 기준액 대비 102.74% 인건비 사용

이이시

(87.609.802.030/99.842.859.000)*100 = 87.74%

→ 기준액 대비 87.74% 인건비 사용

9)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지표 검토

김도사앙) 서울을 미옷만 몇몇 물교부 사시단세를 세외하고는 주민세를
l부분 인상하여 지표의 변별력이 떨어져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A
검토결과) 지표의 상징적 의미 차원에서 지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l견

○ 주민세 인상은 자치단체장의 자구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패널티를 받는 자치단체가 줄었다는 것이 변별력이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자치단체 나름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임

10) 인건비절감노력도

- □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마련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인건비절감노력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존재함에 따라 참고지표로의 이동을 검토
- ☐ (검토결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본 지표에서 삭제하고 보통교부세 공유지표임을 감안하여 참고지표로 이동하며 인건비 집행률로 지표명 변경

제3절 책임성 지표의 검토

1. 기본방향

- ☐ 유사지표의 통·폐합을 통한 지표감축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의 준법성 지표로 통합
- □ 재정분석 취지에 맞지 않는 지표의 폐지
 - 재정공시노력도
- □ 일부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지표의 삭제 검토
 -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표 3-3> 재정 책임성 지표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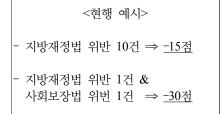
측정관점	분석지표	2017년 검토사항
	24. 재정법령준수	법령위반의 범위(사회보장기본법 제외 검토) 점수 산정 방식 논의
준법성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재정법령준수로 통합
	26.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일부 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 해당 지표로 폐지 의견 다수 개진
투명성	27. 재정공시노력도	점수 조정
대응성	28. 재정분석대응도	

2. 재정책임성 세부 지표 검토

- 1) 재정법령준수 점수 산정 개편
- □ (검토사항) 법령위반사례로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지방재정분석과의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
 - 법률 위반 시 건수와 관련 없이 각 법률 위반 시 일괄적으로 15점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각 법률 당 한건씩의 위반이 있을 시 각 15점 씩 총 45점 감점이 되는 반면, 하나의 법률에서 여러 건 위반이 있어도 15점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평가내용	배점
- 지방재정 관련 법령 위반 사례	-45점
- 지방재정법 위반	-15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점
-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1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O (검토방안)

- 법령 위반 건 당 10점 감점하는 방안
- 법령 위반 건 당 5점 감점하는 방안
- 법령 위반 건 당 2점 감점하는 방안
- 법령 위반 건 당 1점 감점하는 방안
- ☐ (검토결과) 법령 위반의 경우 아무리 사소해도 동일하게 1건으로 처리해야 하며 대신 위반 건 당 감점을 최소하여 건수 당 감점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 (-2점 적용)

2) 재정법령준수 범위 조정

- □ (검토사항) 재정법령준수 범위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지역상생발 전기금전출금확보의 지표 이동
 - 현재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3개 법령위반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확보를 재정법령준수에 추가
 -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추가 검토

- 위반분야 당 감점을 하는 방안(현행방식)과 위반건수 당 감점을 하는 방안을 검토
- 위반 건수 당 감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건당 감점을 -1점 또는 -2점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 □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확보를 재정 법령준수로 이동하여 통합하고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위반을 재정법령준수에 추가
 - 재정법령준수 범위 추가와 함께 위반건수 당 감점 폭을 축소
 - 위반 건수 당 감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건당 감점을 -1점 또는 -2점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2점과 -1점 의 결과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당 -2점이 타당하다고 판단
 -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지방재정분석과의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재정 법령준수 범위에서 제외

평가내용	현행 배점
- 재정법령준수	
- 지방재정법 위반	-15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점
-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15점
- 지방회계법 위반	추가
- 지방계약법 위반	추가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미확보	-5점
- 지역상생발전기금 미확보	-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개선안
-2*N(건수)
-2*N(건수)
제외
-2*N(건수)
-2*N(건수)
-5
-5
0

3) 투명성, 대응성 지표 검토

□ (검토결과) 지방재정공시 노력도의 점수를 조정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

- 재정공시노력도 (10점)- 재정분석대응도 (-5점)

평가내용	배점	평가내용	배점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2점
*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5점	- 준수	0점
홍보실적		- 미준수	-2점
- 4개 이상	5점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오류 없이 정확	-3점
- 37	4점	한가?	<u> </u>
- 2개	3점	- 예	0점
- 1개	2점	- 아니오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5점	*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	-3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	2점	누락, 세출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	э ц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답변 코너 설치 또는 국민신문고 등 연계	2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제공	1점		

□ (검토결과) 재정분석대응도의 경우 점수 배점을 조정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

제4절 신규지표의 검토

1. 신규지표 검토

- □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 개별평가로 진행되어 오던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17년부터 재정분석과 합동평가로 수행
 -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중 대표적인 2~3개 지표를 참고지표로 반영하고 '18년도 신규지표로 예고
 - * ('16년 지표)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경상적 경비 비율,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기금정비

□ 일자리 관련 지표

○ 정부 현안·시책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지표를 참고지표로 추가하고 '18년도 신규 지표로 예고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지표

○ 정부 현안·시책 대응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지표를 참고지표로 추가하고 '18년도 신규지표로 예고

2. 신규지표 검토 결과

- □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 자치단체 측면에서 평가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 관점에서 볼 때 기금평가를 재정 분석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기금성과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기금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화
 - * ('16년 지표)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경상적 경비 비율,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기금정비
 - O 기금분석 지표(예)

〈기금정비율〉

- 기금에 대한 지출총액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대비 기금 지출총액의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수준의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산식) (기금총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100

〈기금미수채권비율〉

- 기금 중 미수채권총액과 기금의 이행기한도래 채권과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 융자성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는 지표이며, 미수채권을 통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 (산식)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 기금미수채권총액) * 100
 -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기한도래 채권액

• 기금미수채권총액: 복식부기결산서 상의 기금미수채권총액

□ 일자리 관련 지표

- 자치단체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측정
- (산식) (일자리사업 결산액 / 정책사업비결산액) * 100
- 산식의 경우 일자리사업비 결산액의 활용 가능성 및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을 통해 수정·보완 예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지표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의 결산액이 자치단체 정책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
- (산식)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결산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 100
- 산식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결산액의 활용 가능성 및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을 통해 수정·보완 예정

제5절 참고지표의 검토

1. 참고지표 검토사항

<표 3-4> 참고지표 검토사항

분석지표	의견	비고
참고 1. 지방채무잔액지수	유지	
참고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유지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연계 지표
참고 3. 장래세대부담비율	유지	
참고 4.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유지	
참고 5. 예산집행률	유지	
참고 6.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유지	
참고 7.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폐지건의(X)	일정금액 이상의 투융자심사사업 의무화로 수집·분석의 시의성 결여
참고 8.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9. 유동비율	폐지건의(X)	통합유동부채비율로 대체
참고 10.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1. 경상재원비율	폐지건의(X)	경상수지비율로 대체
참고 12.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폐지건의(X)	지방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로 대체
참고 13. 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비율	폐지건의(X)	인건비절감노력도로 대체
참고 14. 부채증가액 (증감률)	폐지건의(X)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로 대체
참고 15.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유지	
참고 16. 관리채무부담비율	유지	
참고 17. 관리채무상환비율	유지	
참고 18.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19.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유지	
참고 20. 지방보조금 절감노력도	폐지건의(X)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로 대체
참고 21.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유지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지표와 별도로 재정통계 관리 목적으로 참고지표 21개를 운영 중
- 그러나 참고지표가 많다는 의견이 전문가, 실무자 모두에게서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지표의 경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등 지표의 정리가 필요함

○ 정리가 필요한 참고지표

-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중기재정게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 총에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비율, 부채증가액(증감률), 지방보조금절감노력도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업비의 당해연도 사업예산 반영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지방재정계획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대비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 비율을 측정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의 수시변경과 예산의 추경 등으로 대부분 100%에 근접하도록 비율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분석·수집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의견

•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 중 당초 예산편성 계획액 대비 실제 예산 편성된 금액의 비율로 측정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투융자심사 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 추진 과정 간의 연계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지표이나,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가 의무화된 현재 수집·분석의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

•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 총예산 증가액에 대한 자체수입 증가액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 하는 지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자체수입비율(비율증감률)로 대체가 가능하여 정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 유동비율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의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회계연도 종료일 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복식부기 재정상태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유동부채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고 있어 통합유동부채비율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 고정순자산비율

-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이 점하는 비중 및 증감상황을 측정하는 지표
- 고정순자산은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등 고정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판단하는 지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 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비율

- 지방세수입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이나, 인건비절감노력도에서 인건비 결산액을 산출하고 있어 인건비절감노력도로 대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

• 부채증가액

- 부채총액의 증가액과 증감률로 부채 관리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미율, 공기업부채 비율로 대체할 수 있어 정리가 필요

· 지방보조금절감노력도

-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 지방보조금비율 및 증감률 지표로 대체할 수 있어 정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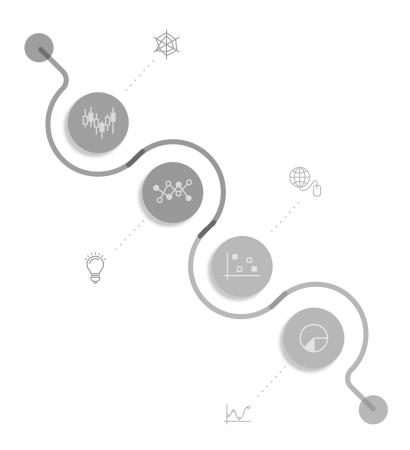
2. 참고지표 검토결과

<표 3-5> 참고지표 검토결과

	분석지표	비고
	1. 지방채무잔액지수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공유지표
	3. 관리채무부담비율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공유지표
	4. 관리채무상환비율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 공유지표
	5. 장래세대부담비율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 예산집행률	
참고지표	9. 의무지출비율	
	1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11. 행정운영경비비율	
	12. 자본시설지출비율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기존 효율성 지표에서 이동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15. 실질수지비율	기존 건전성 지표에서 이동
	16. 인건비절감노력도	기존 효율성 지표에서 이동
	17.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1. 기금정비율	기금분석지표
예고지표	2. 기금미수채권비율	기금분석지표
세포시표	3. 일자리사업지출비율	일자리사업지표
	4.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주민참여예산제도지표

제4장 2017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제1절 2017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 제2절 배점 및 가중치 조정



제 4 장

2017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제1절 2017년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1. 2017년도 지표체계(안)

- 기존 3개 분야(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체계를 유지하여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
- 정량지표(재정건전성, 효율성)와 정성지표(재정책임성) 분야로 배치하여 구성
- 재정건전성(가중치 합계 100%), 재정효율성(가중치 합계 100%)로 구성되어 있던 정량지표 가중치 체계를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가중치 합계 100%)로 조정
 - · 재정수지(17%), 채무(부채)관리(23%), 공기업(10%), 세입(29%), 세출(21%)
- 건전성 지표 중 실질수지비율을 참고지표로 이동하고 광역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던 실질채무비율을 관리채무비율에 통합
- 효율성 관련 지표 중 자체세입비율(증감률)을 세분화하여 지방세수입비율 (증감률)과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로 구분
- 효율성 관련 지표 중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표에 대해 평가 시 사회복지 보조와 함께 민간행사보조를 제외
- 효율성 관련 지표 중 인건비절감노력도와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을 참고지표로 이동
- 재정책임성 분야에서 재정법령준수 범위 및 재정공시노력도, 재정분석 대응도에 대한 점수 조정

정량지표 재정건전성 정성지표 ·효율성 (100%) 재정수지 채무(부채) 세입 세출 공기업 재정책임성 (17%)(23%)(10%)(29%)(21%)관리채무 공기업부채 지방세수입 지방보조금 통합재정수지 통합유동부채 법령준수 및 총자본대비영업 경상세외수입 출자출연전출금 경상수지 환금자산대비 재정운영투명성 이익 탄력세 지방의회경비절감 부채 업무추진비절감 행사축제경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유형별 자치단체 유형별 자치단체 유형별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법령준수 표준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 ·재정분석대응 (Z-score) (Z-score) (Z-score) (Z-score) ·재정공시노력 자치단체 유형별 상대적 점수부여 상대적 점수부여 상대적 점수부여 상대적 점수부여 표준점수(Z-score) * 일부 절대평가 * 일부 절대평가 * 일부 절대평가 일부 절대평가 기준 상대적 점수부여 기준 기준 기준 (재정진단 연계) (시책, 사업 중심) 일부 절대평가 기준 (재정진단 연계) (재정진단 연계) (보통교부세 공유) (보통교부세 공유) 분야별 점수 분야별 점수 분야별 점수 분야별 점수 분야별 점수 총점에서 가/감점

<그림 4-1> 2017년 재정분석 지표체계(안)

<표 4-1>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안)

분야	부문	재정분석지표	비고
	ا ا ا ا	통합재정수지비율	국제기준
	수지 관리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재정		관리채무비율	BTL지급액 포함
건전성	채무 관리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복식부기
(7개)		통합 유동 부채비율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공단 포함
	중기합 된다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공단 포함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신규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세이중으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세입효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재정효율성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2개)	세출효율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평가제외대상 확대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지방재정법 위반	위반 건 X -2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건 X -2점
	법령준수	지방회계법 위반	위반 건 X -2점
재정책임성	김성군구	지방계약법 위반	위반 건 X -2점
(3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미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미확보 -5점
	대응성	재정분석 대응도	-5점
	투명성	재정공시 노력도	+10점
정량 : 19개	, 정성 : 3개	※ 재정책임성 지표는 총점에서 가/감점	

2. 2016년도와의 비교

1) 지표체계 개선

- 정량지표 분야(건전성, 효율성) 정성지표 분야(재정책임성)으로 지표체계 유지
- 분야: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재정책임성
- 지표 : 정량지표, 정성지표

2)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지표 개선

- O 신규 지표 도입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기금성과분석지표(참고지표, 신규예고지표)
- 일자리지표(참고지표, 신규예고지표)
- 주민참여예산제도 지표(참고지표, 신규예고지표)
- 지표 삭제 및 이동
- 실질수지비율(참고지표로 이동)
- 실질채무비율(관리채무비율로 통합)
- 자체세입비율(증감률)(지방세수입비율과 경상세외수입비율로 구분)
- 인건비절감노력도(참고지표로 이동)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참고지표로 이동)

3) 재정책임성 지표 개선·보완

- 재정법령준수 점수 부여 체계 개선(위반 건수 x -2점)
- 재정분석 대응도(-5점)
- 재정공시 노력도(+10점)

<표 4-2> 2016년도와 2017년도 지표체계 비교

	2016년 지표	2017년 지표(안)			
분야	지표	분야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실질수지비율		<참고지표 이동>		
	3. 경상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r -11-21	4. 관리채무비율	r11-21	3. 관리채무비율		
I .재정 건전성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I .재정 건전성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선선경	6. 실질채무비율	선선경	<관리채무로 통합>		
	7. 통합유동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8. 공기업부채비율(공단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공단 포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지표삭제>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신규)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명칭변경)		
I.재정 효율성	17.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Ⅱ.재정 효율성	15.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명칭 변경)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참고지표 이동>		
	19. 인건비 절감노력도		<참고지표 이동>		
	20.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산식변경>		
	2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산식변경>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3. (신규)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재정법령준수로 통합>		
m 71174	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m 71174	<재정법령준수로 통합>		
Ⅲ.재정 책임성	3. 재정법령준수	Ⅲ.재정 책임성	1. 재정법령준수		
700	4. 재정공시노력도	700	2. 재정분석대응도		
	5. 재정분석대응도		3. 재정공시노력도		

제2절 비점 및 가중치 조정

1. 분야별 배점 검토

1) 검토사항

- O 현행 분야별 배점 체계 유지
- 재정건전성 대 재정효율성 : 500점 : 500점
- 세부 지표의 가중치 재조정

2) 검토결과

- 1차 분류(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를 유지하여 지표체계의 안정성 유지
- 재정수지, 채무 및 부채, 공기업, 세입효율, 세출효율의 5개 분야의 재정분석 지표체계 유지

2. 지표별 가중치 검토

- 신규지표 도입(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및 지표 이동 및 삭제(실질수지비율, 실질채무비율, 인건비절감노력도, 자본시설유지관리리비율(증감률))로 인한 기존 지표들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반영의 확대를 위해 지표의 반영 비율 조정
- 비율:증감률 기존 6:4에서 5:5로 조정
- 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에 대한 기중치 확대
- 채무 및 부채지표,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비율 지표에 대한 가중치 축소 조정
- 전문가(학계, 실무)¹⁾ 의견조사²⁾ 및 2016년도 지방재정분석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가중치 조정(안) 마련

¹⁾ 전문가 의견조사는 신규지표(지방세수입비율), 삭제 및 이동지표(실질수지비율, 실질채무비율, 자체세입비율,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인건비절감노력도)를 제외하고 실시

²⁾ 가중치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는 학계(TF 위원 4인 외부2인), 실무자(TF 위원 3인), 연구원(4인) 등 13인 실시

<표 4-3> 지표별 기중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분류 년 수지 (17 재정 건전성 채무 (500점) (22	2차 분류 기 관리 7.5%) 무 관리	재정분석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기존 15% 10%	가중치 1/2 7.5%		(%) 유지	증가	비고
수지 (17 재정 건전성 채무 (500점) (22	시 관리 7.5%)	실질수지비율	15%			유지	츳가	
지정 건전성 채무 (500점) (22 공기·	7.5%)	실질수지비율		7.5%				
지정 건전성 채무 (500점) (22 공기·	7.5%)		1/10/-	50/	20	30	50	.1-
재정 건전성 채무 (500점) (22 공기		경상수시비용		5%	-	-	-	이동
건전성 채무 (500점) (22 공기	구 관리		10%	5%	-	40	60	
(500점) (22 공기·	수 꾸리	관리채무비율	27%	13.5%	70	30	0	
공기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4%	7%	80	10	10	
	2.5%)	통합유동부채비율	4%	2%	40	60	0	
		실질채무비율	9%	4.5%	-	-	-	통합
(1	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5%	0	100	0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5%	0	100	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4%	-	-	-	폐지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	-	-	-	신규
	세입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10	20	70	
3	<u>බ</u> ිපි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0	70	30	
(2)	1.5%)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10	20	70	
	<u> </u>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10	20	70	
재정		탄력세율적용노력도	6%	3%	70	20	10	
효율성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0%	5%	20	30	50	
(500점))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8%	4%	20	30	50	
	세출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8%	4%	-	-	-	이동
		인건비절감노력도	7%	3.5%	-	-	-	이동
	효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3%	10	80	10	
(28	8.5%)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3.5%	40	50	10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7%	3.5%	10	50	40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	2%	10	50	40	
		재정법령위반 (6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	점		-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5점		E-21
	15.1-1	지방재정법 위반	분야 당 -15점				<u>점</u>	통합
	널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점		<u>-</u> 수X-2		및
	재정 (감점) 책임성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15점		<u>.</u> 삭제		삭제
책임성		지방계약법 위반		-	건.		 점	
		지방회계법 위반		_		: 수X-2		
		재정분석대응도	-10)점		-5점		변경
०।४	센티브							
-	면 기 가점)	재정공시노력도	+1:	5점		+10점		변경
	,	※ 재정책임성 분야는 총점에서						
1,0	000점	가/감점						

<표 4-4>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가중치 조정(안)

1차 보류 보류 재정분석지표 '16년 가증치 '17년 조정(안) 수지 관리 (17%) 실질수지비율 15% 7.5% 12% 실질수지비율 10% 5% -	바 고 +4.5% -5% - +0.5% - - - - - - - - - - - - - - - - - - -
지 관리 (17%) 등합재정수지비율 15% 7.5% 12% 실질수지비율 10% 5% - 경상수지비율 10% 5% 5% 전선성 전선성 (500점) 전전성 (23%) 등합유동부채비율 14% 7 7% 통합유동부채비율 4% 2 2% 실질채무비율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5 5% 조차본대비영업이익률 10% 5 5%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4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5%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지방세정수율(제고율) 8% 4 5% 지방세청수율(제고율) 8% 4 5% 지방세청수율(제고율) 8% 4 5% 지방세청수율(제고율) 7% 3.5 5%	-5% - +0.5% - - - - - - - - - - - - - - - - - - -
지정 전전성 채무 관리 (17%) 불질수지비율 10% 5% 5% 전전성 채무 관리 (23%) 통합유동부채비율 14% 7 7% 실질채무비율 27% 13.5 14% 청골채무비율 4% 2 2% 실질채무비율	-5% - +0.5% - - - - - - - - - - - - - - - - - - -
재정 건전성 (500점) (23%) 환급자산대비부채비율 14% 7 7% 통합유동부채비율 4% 2 2% 실질채무비율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5 5%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5 5%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4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5% 정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 +0.5% - - - - - - - - - - - - - - - - - - -
재정 건전성 (500점) 채무 관리 (23%) 환급자산대비부채비율 14% 7 7% (23%) 통합유동부채비율 4% 2 2% 실질채무비율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5 5%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5 5%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4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5% 정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지방세취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 - - - -4% 신규 +1.5% +1%
전전성 (500점) 채무 관리 (23%)	- -4% 신규 +1.5% +1%
(500점) (23%) 통합유동부채비율 4% 2 2% 실질채무비율	- -4% 신규 +1.5% +1%
실질채무비율	-4% 신규 +1.5% +1%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10% 5 5%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5 5%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4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5%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2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4% 신규 +1.5% +1%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5 5%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4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5% 세입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5% 효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2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4% 신규 +1.5% +1%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8% 4 -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5% 세입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5% 효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2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신규 +1.5% +1%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5% 세입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5% 효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2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1.5%
세입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7% 3.5 5% 효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2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1%
효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8% 4 5% (2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2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1 50/-
\ \ \ \ \ \ \ \ \ \ \ \ \ \ \ \ \ \ \	1 1.3/0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7% 3.5 5%	+1.5%
재정 탄력세율적용노력도 6% 3 4%	+1%
효율성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0% 5 5%	-
(500점)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8% 4 4%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8% 4 -	-4%
세출 인건비절감노력도 7% 3.5 -	-3.5%
효율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3 3%	-
(2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3.5 3%	-0.5%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7% 3.5 4%	+0.5%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 2 2%	-
재정법령위반 (6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5점	E원
페널티 지방재정법 위반 분야 당 -15점 건수X-2점	통합
	및
재정 (감점)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분야 당 -15점 삭제	삭제
책임성 지방계약법 위반 - 건수X-2점	
지방회계법 위반 - 건수X-2점	
재정분석대응도 -10점 -5점	변경
인센티브 (전기) 재정공시노력도 +15점 +10점	변경
(가점) 세성공시도덕도 +13심 +10심	변경
22개 1,000점 ※ 재정책임성 분야는 총점에서	
22개 1,000점 가/감점	

<표 4-5> 2016년 지방재정분석 대비 2017년 지방재정분석 지표비교

	2016년 재정분석		2017년 재정분석			
분야 (1000점)	지표	비중	분야 (1000점)	지표	비중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	
	2. 실질수지비율	10%		<참고지표> 이동	-	
	3. 경상수지비율	10%		2. 경상수지비율	5%	
I .재정	4. 관리채무비율	18%(광역) 27%(기초)	I .재정	3. 관리채무비율	14%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4%	건전성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	
(500점)	6. 실질채무비율	9%(광역)	(500점)	<지표삭제>	-	
	7. 통합유동부채비율	4%		5. 통합유동부채비율	2%	
	8. 공기업부채비율 (공단 포함)	10%		6. 공기업부채비율 (공단 포함) 5%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10. 자체세입비율			<지표삭제>	-	
	(비율증감률)	8%		<신규지표>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5%	
	1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8%		9.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5%	
	12. 지방세체납액관리 비율(증감률)	7%		10.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5%	
Ⅱ.재정	13.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7%	I.재정	11. 지방세체납액관리 비율(증감률)	5%	
효율성 (500점)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 비율(증감률)	7%	효율성 (500점)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 비율(증감률)	5%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6%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4%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10%		14.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5%	
	17. 출연출자전출금비율 (증감률)	8%		15.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증감률)	4%	
	18.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증감률)	8%		<참고지표> 이동	-	
	19. 인건비 절감노력도	7%		<참고지표> 이동	-	

	2016년 재정분석		2017년 재정분석				
분야 (1000점)	지표	비중	분야 (1000점)		지표	비중	
	20.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6%		16.	지방의회경비절감 노력도	3%	
	21.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7%		17.	업무추진비절감 노력도	3%	
	22.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7%		18.	행사축제경비비율 (비율증감률)	4%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4%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	
	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표통합>	-	
	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지표통합>	-	
					재난관리기금전 출금확보	-5점	
			Ⅱ.재정	20. 재 정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Ⅲ.재정 책임성			책임성 (감점		재방재정법위반	건수 당 -2점	
(-45~ +15)	3. 재정법령준수	-45점	상한 업음)	법령	보조금관리법률위반	건수 당 -2점	
				준	사회보장법위반	삭제	
				수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 당 -2점	
	4. 재정공시노력도	+15점		21.	재정공시노력도	+10점	
	5. 재정분석대응도	-10점		22.	재정분석대응도	-5점	

^{※ (&#}x27;15FY) 건전성, 효율성 각각 100% 기준 / ('16FY) 건전성 및 효율성 합쳐서 100%

【 부록 】 2017년도 지방재정분석지표(안)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3.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I . 재정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건전성	5.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하향지표	통합부채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	하향지표	공기업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	상향지표	공기업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율)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Ⅱ. 재정 효율성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20. 재정법령준수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감점
Ⅲ. 재정 책임성	21. 재정공시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인센티브	가점
700	22. 재정분석대응도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감점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참고지표 : 17개

①지방채무잔액지수, ②지방채무상환비비율, ③관리채무부담비율, ④관리 채무상환비율, ⑤장래세대부담비율, ⑥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⑦중기 재정계획반영비율, ⑧예산집행률, ⑨의무지출비율, ⑩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⑪행정운영경비비율, ⑫자본시설지출비율 ⑬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⑭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⑮실질수지비율 ⑯인건비집행률 ⑰결산대비금융 부채비율

◈ 예고지표 : 4개

①기금정비율, ②기금미수채권비율, ③일자리사업지출비율, ④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부록】2017년 지방재정분석 지표 배점(가중치)

1차 분류	2차 분류	재정분석지표	비중(안)	비고
	수지 관리			
(17%)		경상수지비율	5%	
-11-1-1-1-1	-ND -1-1	관리채무비율	14%	
재정건전성 (500점)	채무 관리 (23%)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7%	
(300名)	(23/0)	통합유동부채비율	2%	
	공기업 관리	공기업부채비율	5%	
	(10%)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5%	신규
	. 11 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5%	
	세입 효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5%	
	요골 (2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	
	(2770)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	
재정효율성		탄력세율적용노력도	4%	
(500점)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5%	
	vn ⇒	출연출자전출금비율(증감률)	4%	
	세출 효율 (21%)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3%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3%	
	(2170)	행사축제경비비율(비율증감률)	4%	
		민간위탁금비 율증 감률	2%	
		재정법령위반 (6개)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페널티	지방재정법 위반	건수X-2점	통합
재정책임성	(감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X-2점	
7110710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X-2점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X-2점	
		재정분석대응도	-5점	변경
	인센티브 (가점)	재정공시노력도	+10점	변경
22개	1,000점	※ 재정책임성 분야는 총점에서 가/감점		

【부록】지표별 정의표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재정효율성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재정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21. 재정공시 노력도22. 재정분석 대응도

1.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	재정건전성			田口	내용	2		재정-	수지
개요(정의)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정활동	의 적자	또는 흑자 등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통합재정수	기비]율(%)	= ()	네입-기	지출	및 순	·융자)	/ 통합지	배정규모 × 100
산정공식	(경상수약	 ※ 정부(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 (경상수입+이전수입+자본수입)-(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회 융자지출)/ 통합재정규모 					출)+(융자회 수-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	도	결산				산출 통계)) e	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특성 : 일t			시표	·			·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늦	들을	수록 ㅂ) 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	l반3	회계, 7	' 타특	별회	계, -	공기입	널특별	회계, 기 [.]	금회계)
	통합재정수	지비	율							(단위 : 원)
الدادات	회계구분	세 입 액 (A)	세입액 + 순세계 잉여금 (D)		(B)	응자 순 응자 (b)	통합 재정 규모 (C)	순 세계 잉여 금 (d)	통합재정 수지 비율 (%) (A-B)/C× 100	비율
제출서식	계			,	(.,)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통합재정	규도	! = 지	출 및	! 순	융자				
								연	락처	
검증자료	2016회계연5	Ē e.	호조상	의 통	-합재	정수	지		성자 성부서)	

〈통합재정 수지 작성 근거 및 내용〉

구분	국가	지방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59조				
시작연도	'79년	'05년('04년 시범)				
작성기준	정부 재정통계 지침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분석 요령				
주요내용	예산·결산 모두 공표	• (결산) 「지방재정365」에 전체 규모 공표, 기재부에 통보, 기재부에서 국제기구(IMF) 통계 제공 • (예산) '13년 처음으로「재정고」에 공표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 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지금 지출)
 -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 지출
 - = (세입+융자회수) (세출+융자지출)
 - = 세입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규모 × 100

2. 경상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도	E내용	Z	내정=	수지						
개요(정의)	복식부기 재정운 [©] 지표	영표의	경상수	누익 대비	경상비용의	의 비	울을 측	정하는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경상적 높을수록 경상수익의						-	. — .					
산정공식	※ 경상비용 : 인건 특별 ※ 경상수익 : 지방 +자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 경상수익 × 100 경상수익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 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사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e호조 (외부통계) 복식부기 재무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 ² 특성 : 일반지표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	[이 바	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ᅨ, 기티	ት특별 호	희계, 공기	업특별회계	ll, 기급	극회계)						
	경상수지비율						(단위	위 : 원)					
	경상비용(/	A)	-1:1=	-11	경상수익(F		-111						
	계 (①+②+③+ 인건비 (①+⑤) ①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운영비 ② (자치구 조정 교부금 (③광역)	계 (⑥+⑦+⑧+ ⑨+⑩-⑪)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지방세수익 (⑥)	경상 세외 수익 (⑦)	지방 교부세 수익 (⑧)	지표값 (%) (A/B) ×100					
제출서식	기급하게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광역)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기급회계 내부거래	시· 조정교 (④공	부금	하기합독절 기금회계 내부거래 특별 교부세 수익(⑪)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익 (⑨기초)	조정: 수	군 교부금 의 기초)						

	2016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서	연락처	
검증자료	(성질별 재정운영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복식부기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상비용과 경상수익 내역을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3. 관리채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목	구 현재액의 비	울을 측정하	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상대적 수준 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표로 그 비	율이 낮을수록 재무							
	관리채무비율(%) = ^지	방채무잔액(BT 세입결4	L 지급액 3 산액	<u>포함)</u> × 100							
	※ 지방채무잔액은 2016 지방채무잔액 적용	지방채무잔액은 2016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 지방채무잔액 적용									
산정공식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 지급액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자치단체의 지역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 잔액은 ※ BTL 지급액 ⇒ 준공 후 자치단체회 으로 향후 민간사업 지급할 금액 	리 소유권이 이전	넌된 시설물이	게 대해 결산일 기준 총액 중 순지방비로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료산출 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 특성 : 일반지표, 주민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비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	타특별회계, 공	기업특별회기	례, 기금회계)							

	관리채	무비율							
								(단위: 원)	
			2016 지빙	채무 잔	액(A)		2016	지표값	
	,	계(A =	지방채증권	채무	보증	BTL	세입	(%)	
	구 분	(a)+(b)+(c)	및 차입금	부담 행위	채무 이행액	지급액	결산액		
제출서식		+(d)	(a)	(b)	©	(d)	(B)	(A/B)×100	
세물시식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2016회	계연도 서	입세출결신	· - - - - - - - - - - - - - - - - - - -	ዘ무결산5	보고서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	검증시 확	작성자						
	▶ 채무결	별산보고서	의 채무현	황과 일	일치여부		(작성부서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채무(부채)관리							
개요(정의)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로 채무부터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환금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		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그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 환금자산 × 100 ※ 환금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 ※ 부채총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치 비유동부채 ※ 유동자산 :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현금, 예금 등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과 선급비용 ※ 일반미수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 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을 제외함 **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미지급금, 장기선수금, 장기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외부통계)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	타특별회계, 공기	업특별회계, 기금회계)							

	환금자산	대비 부	나채비율	<u></u>							
					((단위:원)					
		부채총액(A) 환급7							(B)		지표값
	구분	계 (A= a+b+c)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c)	계 (B= d+e+ f+g)	유동 자산 (d)	장기 금융 상품 (e)	장기 대여 금 (f)	기타 투자 자산 (g)	(%) (A/B)× 100
제출서식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2016회계				난서(자	정상	태표)	Ç	면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 재정성장기다	태표의			· 사, 장	기금성	웅상품		악성자	-	
	유동부 확인	·채, 정	기차역	입부채,	기타	비유	동부치	대 (작	성부/	너)	

5. 통합유동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개요(정의)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해석 및 특징	통합부채 관점에서 유동 유동자산 (1년 내에 자금회수가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가능한 자신	<u>나</u>)의 충당정	, _ ,,								
	통합유동부채비율(%) =	통합유동부채비율(%) = 유동부채 유동자산 × 100										
산정공식	- 세출결산액 : 결산서 통 (지출액)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와 유동자산 네출결산액: 결산서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 결산총액 지출액) 통합부채 기초자료 제출된 최종자료와 일치토록 작성 및 입력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근사추 요ㅎ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	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 + 지방공사·공단 + 출기			1계, 기금회계)								
	통합유동부채비율			(단위 : 원)								
제출서식	(A) (식영기업 포함) ·공단 출연	1기관 (B) `	유동자산(B 지자체 직영기업 포함)	B) 지표값(%) 공사 출자· (A/B) 단 출연기관 × 100								
	입력 입	접 력 및 기관별 결	직 ⁷ 입 ¹ 산서상의 유동	력 입력								
검증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20 현황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및 기관별 결산서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과 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연락처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2016 회계연도 통합부채 착성자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통합부채 상의 유동부채, 유동자산 항목 확인 										

6. 공기업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공기 부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정	S]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공기업부채비율(%) = 부 자	채총 기자	-액 × 10 본	00								
2001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측정시점(기간	<u>'</u> })	2016회계연도 결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 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표											
지표특징		' ' ' ' '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건	것이 바람?	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저	기방공사, 기	지방-	공단									
		공기업부채비율							(단위: 원)					
		구분	부채총약	백(A)	7	자기자	본(B)		E값(%) B)×100					
제출서식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임]력		직접	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	력		직접'	입력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연락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검증자료		 ▲ 건영기업, 지방 자기자본, 부차 	방공사, 지	방공	단 재정	상태.		}성자 성부서)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분류	재정건전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공기업										
개요(정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총자본에 대한 영업이익으 공기업 영업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로 그 비율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총자본대비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총자본 × 100										
산정공식	* 총자본 :	* 영업이익 :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9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공기업경영정 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재무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	은 것이 비	람직									
대상회계	지방직영기업	법, 지방공시	·, 지방공	공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단위:원					
				å	충자본(B)		7] 17 7k(0/)					
제출서식	구분	영업이익(A)	소계 (a+b)	자	·기자본(a)	부채(b)	지표값(%) (A/B)×100					
	합 계											
	지방직영기업	직접입력		- 3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사	직접입력			직접입력	직접입력						
	지방공단	직접입력		- 4	직접입력	직접입력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손익 계산서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직영기업, >		 방공단의		상태표의	작성자 (작성부서)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신규〉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대비 지방세수입의 비율		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세수입 확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지방세수입비 증감률의 지표값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 높은 것을 의미										
	2. 지방세수입 증감률(%	 지방세수입비율(%) = 2016년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6년도 세입결산액 × 지방세수입 증감률(%) = 										
산정공식	2015년도 기준 ※ 지방세 실제수납액 :	2016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2015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x 1년 2015년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난년도 수입)분(113)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3~2016회계연도 결 (3년간 평균)	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를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표값이 높은 것이 비	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1. 지방세수입비율		(단위 : 원)									
제출서식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	예입 지표값 (%) 결산액 (B) (A/B) ×100									
	2014	2015	2016									
	[[(A)] " ["]	지방 과년도 수입 (c)										

-																			
		2.	지방	세수입	증감	률												([단위 : 원
ا (احتات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B)				지표값(%) {(A-B)/B}> 100					
	제출서식			20	14		20	015	20	016	,		201	13	20	14	20	015	
		평 균	소계	지방세 지방 과년도 소계 수입 교육 수입 (a) 세(b) (c)															
			2013~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검증자료	▶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실제수납액 확인 - 지난년도수입(113) 제외 - 지방교육세(112-02) 제외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	정효율	율성	지표내용	-		세입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의 증대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신 대비 경상세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비율과	경상세외수입 확충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경상세외수 율과 증감률의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 '준이 높은 것을 의미											
	201	. 경상세외수입비율(%) = 2016년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2016년도 세입결산액 × 1											
산정공식	2016	 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2016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장수액 - 2015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 장수액 x 10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측정시점(기간)			회계연도 결산	자리사	출		수입정토	- - - - - - - - - - - - - - - - - - -					
지표특징			미시적 지표 교부세 공유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	값이 높	들은 것이 바닥										
대상회계	일반	회계											
	1. 경	상세외=	수입비율				(1	단위 : 원)					
제출서식	\\\\\\\\\\\\\\\\\\\\\\\\\\\\\\\\\\\\\\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A) (%) (A/B) (B) ×100											
	평균		2014		2015	2016							
	(A)	소계	경상세외수입(a) 이자수입(b)									

		2.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단위 : 원													
			저녀도	. 기준 최근 3년	키가 겨사서	이수	<u>.0]</u>			_	전년도	- 1	지표값(%)			
			실제수납액(A)								3년간 경상세외수입					{(A-B)/B}×
	제출서식		_ ", _ ,									실제수납액(B)				
				2014				2016	,		2013	20	014	20	15	
		평균	소계	경상세외수입	이자수입					평균						
			오세	(a)	(b)											
		2013	2013~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락처					
	コス키コ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검증자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작성자						
				출총괄 설명			결/	산총	괼	<u> </u>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표분류	재정	성효율	율성		지표	내용			세	입			
개요(정의)	지방서 실제수님					-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서 있는 지				,					도를 파 ⁹ 미	악할 수		
	※ 과	1. 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공식	(단,)16년 2년 역	 도 지 면속 >	방세징: 지방세	수율 / <i>1</i> 징수율 ⁰ 을 부여	98%			—	고율 1억	이 넘는		
측정시점(기간)	2015~	2015~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지방세시스 ¹ (외부통계) e호조							스템(위	택스)			
지표특징				적 지: 네 공유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집))이 높	높은 것	선이 바	람직								
대상회계	일반회	힉계											
	1. 지병	ŀ세징<	수율							(단위	의 : 원)		
		2016년 지방세징수율											
제출서식	계(%) A=(a/b) ×100	A=(a/b)								자동차세 비세 징수결정액)			
		소계 (a)	실제 수납액	과년도 분	자동차 세 (주행분)	지방 소비세	소계 (b)	실제 수납액	과년도 분	자동차 세 (주행분)	지방 소비세		
					직접 입력					직접 입력			

	2 7	지방	네지	수유	- ズ		윤															
	2.												(단위 :			원)						
			2016	년 지	방서	징=	수율				2015년 지방세징수율						$\overline{}$					
	실제수납액- 계 (과년도분, (%) 자동차세 A= (주행분), (a/b) 지방소비세 ×100 실제수납액)				계 (기)		실제수납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 (과년도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지									
		(a)			(b)			실]제수납액) (c)			징수결정액) (d)				(d)	В				
제출서식		소 7 계 4 (a) ¹	실제수납생	자 세 시	지 방 소 비 세	소 계 (b)	실제 수 납 액	과 년 도 분	자동차세주행분 직접입력	지 방 소 비 세		소 계 (c)	실 제 수 납 액	과 년 도 반	자동차세(주행분) 직접입력	지 방 소 비 세	소 계 (d)		과 면 모 뿐	자동차세(주행분) 직접입력	방 소	
	2015~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검증자료	세 지		목별 도	조사 수'	ا의	フ	시빙	소			11-(·동치	- 1			성지 부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관리노력 증진을 위하여 세입결성 지방세 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악할 수 있는 지표로 체납액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산정공식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 2016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6년도 세입결산액 × 100 ※ 2016년 체납누계액: 2016년 미수납액* - 2016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 2016년도 체납누계액 - 2015년도 체납누계액 × 100 										
	* 2015년도 체납누계액 ** 2015년 체납누계액 : 2015년 다음연도 이월액 - 2015년 자동차세 (주행분) 다음연도 이월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결손처분액은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5~2016회계연도 결신	자료산출 (외부통계)	지방세시스템(위택스) e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탕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1. 지빙	세체납의	백 관리비율	<u>}</u>				(단위 : 원)
		2016년도	- 말 현재 최	l납누계액				(인기 · 전)
	반영액 (A=a-b)	체\ 누겨 (a	함	자동차세 체납누 (b	-계액	결·	입 산액 B)	지표값(%) (A/B) ×100
				직접	입력			
제출서식	2. 지방세	체납액 -	증감률					(단위 : 원)
	2016년도	말 현재 >	세납누계액	2015	년도 말 형	현재 체납	누계액	
	반영액 (A=a-b)	체납 누계액 (a)	자동차세 (주행분) 체납 누계액 (b)	반영액 (B= c-d-e)	체납 누계액 (c)	결손 처분액 (d)	자동차서 (주행분) 체납 누계액 (e)	
			직접입력				직접입력	1
			년도 세입시 1	KI C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지방세 체납액, 체납징수액 ▶ 연도말 체납누계액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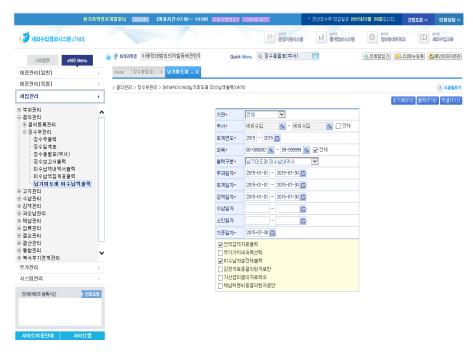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입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세외수입체납누계액의 비율						
해석 및 특징	세외수입 체납액의 연도별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산정공식	1.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 2016년 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2016년도 세입결산액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2.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 2016년도 말 체납누계액 - 2015년도 말 체납누계액 × 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5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5~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 (외부통		외수입정보시스템 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자	以丑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림	식					
대상회계	일반회계						
1.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단: 제출서식 2016년도말 현재 세외수입 계압 (A/B 결산액 (A/B 제납누계액(A) (B) ×100							

	2. 세외수입 체	납액 증감	륟					(단위 : 원)
	2017년 대 원제	20		지표값(%)				
제출서식	2016년도말 현재 체납 누계액(A)	반영액 (B=c-d-e)	체납 누계액(c)	납기미. 미징수9		결손 처분액(e)		{(A-B)/B}× 100
				아래 e호조 값 2015년도 직접입력				
	2015~2016회계인	면도 세입서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후 세외수입정보 세입세출총괄	시스템 자회	 로 활용	<u> 총</u> 괄	작성자 (작성부서)			

-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세입관리-결의관리-징수부관리-납기미도래미수납 내역 출력 (납기미도래미수납 내역서) 금액을 그대로 입력

부과일자: 2015.1.1. ~ 2015.1.2.31.
회계일자: 2015.1.1. ~ 2016. 2.28.
감액일자: 2015.1.1. ~ 2016. 2.28.



95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지표분류	재정효·	율성	지표내	용	세입						
개요(정의)	—	기 위해 표준			을 어느 정도 세율 과세총액의						
해석 및 특징	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변	가로 확보할수 나대로 탄력세율 노력이 낮은 건	울을 활용					
산정공식	(2016년5 / 2016년 세목의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2016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의 / 2016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약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직접입력 및 근거자료 제출 (외부통계)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탄력세율 적	용 노력도			(E	<u>.</u> 위 : 원)					
	탄력세율 적용세목	2016년도 해당 적용세율로 ² 세목의 과서	징수한 해당	지방세법상 표	l당 자치단체의 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B)	지표값 A/B					
제출서식	총계	직접역	입력	직접	입력※						
	※ 주민세 균등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세율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양식의 총합으로 직접 입력할 것.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일괄조사 대응 부서에 문의하여 작성.										
검증자료	※ 현장검증▶ 지방세=	도 세입세출 5시 확인사항 수입의 징수의 세율관련 조	(v)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u>E</u>							
개요(정의)	세출결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두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구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1. 지방보조금비율(%)	= 지방보조금 경 세출결산역									
	(2016년도 지방보조금	2. 지방보조금증감률(%) = (2016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2015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산정공식	2015	년도 지방보조금	결산액								
	(307-03), 민간행/ 보조(307-10), 사회	 ※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평가 시 사회복지보조(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측정시점(기간)	2015~2016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e호조] 부속	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 특성 : 보통교부세 공]丑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ㅂ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	계									
	1. 지방보조금비율			(단위	님 : 원)						
제출서식	The part										

	2. ス	방보	조금	증감	률								(단위	: 원)
	2010	2016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산액(A) 2015 회계연도 지방보조금결							결산약	백(B)	-1 TS				
			민간		사회					민간		사회			지표 기표
	계	민간	단체	민간	복지	사회	민간	계	민간	단체	민간	복지	사회	민간	값 (0/)
	(A=	경상	법정	행사	시설	복지	자본	(B=	경상	법정	행사	시설	복지	자본	(%) {(A
ᆌᅕᆡᆀ	a+b	사업	운영	사업	법정	사업	사업	g+h+	사업	운영	사업	법정	사업	사업	-B)
제출서식	+c+d	보조	비보	보조	운영	보조	보조	i+j+	보조	비보	보조	운영	보조	보조	/B}
	+e+f)	(a)	조	(c)	비보	(e)	(f)	k+l)	(g)	조	(i)	비보	(k)	(l)	×100
			(b)		조(d)					(h)		조(j)			^100
	일반														
	회계														
	기타														
	특별														
	201	5~20	ا 16	회계인	년도 -	세입	네출	결산시	네 부	속서	류	연락	∤처		
검증자료	₩ ₹	현장감	실증시] 확	인사	}(/)					작성	장		
	▶ >	네입시	ll출결	신사	상	의 지	방보	조금	항몬	¦ 확	인 (2	작성.	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세출결산액에 대한 ·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율로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수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높은 것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dfrac{$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times 세출결산액								
산정공식	(2016년도 출자·출연·	2.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2016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2015년도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2015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10							
	공단자본전출금 특별회계 자본	(404), 공기업특별회 전출금(701-03)	·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계 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 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은						
측정시점(기간)	2015~2016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								

	1. 출기	사∙를	출연	·전	출금	비율									
														(단의	귀 : 원)
					출연・	출자・경	선출금	결산액(A)					지표값	
	계		_					공사공단	- 3	문기업	-i	공기약	쉬	세출	(%)
	(A=a-		출지	1	출연금		출금	자본		별경		특별지		결산액	(A/B)
	+c+d+e	e+1)	(a	1)	(b)	(c)	전출금(d		출금		전출금		(B)	×100
	일반호	계													
	기타트	増													
	공기업														
	기는	1													
	2. 출기	٩·﴿	출연	·전	출금	증감물	룰								
제출서식														(단의	귀 : 원)
(개월/기년			2016	회:	계연도					2015	회:	계연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A)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B					지표				
		_			공사				_					기 공기	
	계 (A=a+		출 선		공단	업특 버건	업특		출 자	출 연		공단			
	(A=a+ b+c+d	자 금	연 금	팔	자본 전출	별경 상전	별자 본전		사금	건금	눌금	자본 전출	별 ⁷ 상 ⁷		1 / 1
	+e+f)				금	출금	출금		(g)	(h)	(i)		출		
					(d)	(e)	(f)					(j)	(k	(l)	
	일반														
	회계														_
	기타 특별														
	공기업														1
	특별														
	기금														
	2015	~20	16	<u>رَا</u>	계여대	- 서	[인서	 출결신	-서	(연리	ŀ처			
	부속서		.0	-1	1111-	- '\	Π.,	1221	'''			1 1			
	* 현		ス:	≱1 ₹	ร์ไดโว	しさし ・	/ \								
カスカコ								1 초서	٦						
검증자료	1							1, 출연 1 고리			작성				
	1							H, 공기		(3	남성.	부서)			
	1					급, 궁	5기입	널트별호	계						
	사.	본전	출	급 호	작인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지방의회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	r력도(%) =	= <u>지</u>	방의회경 방의회경]비 결선]비 기준	├액 ── X 1 등액	.00			
산정공식	- 의원국외여비(2 (205-06)	 ※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원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6.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 (외부통		e호조 직접'	_					
지표특징	거시/미시 : 겨 특성 : 평가지		•	'유지:	Ħ.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지방의회경비 경	설감 노	력도				(r.l.	0] . 0]\			
	기비시하기	ul 7411	NI(A)		기비스	ローコスの		위 : 원)			
	지방의회경		객(A) 예외사항으로		지방의회경	비기군인		 지표값			
제출서식	(A= 국외 공통	(A= 국외 공통 업무 집행된 (B=d 국외여비 공통경비 급부 (A/B)X (-c-d) 여비(a) 경비 추진비 국외여비 국외여비 (d) (e) (f) 100									
	일반	일반 직접입력 일반 직접입력 직접입력									
	※ 기준액은 지	-치단체	직접입력,	결산	액은 e호	조로 신	<u></u>]출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시달 지방의회경비 기준액과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증빙자료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금액 관련 지방의회 의원정수, 상임위원회수 등 확인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지표분류	재정.	효율성	ス	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추진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절감 노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진비 기준액 대비 결산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절감하였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추진비용을 기준금액 대비 얼마나 설감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전 -력이 높은 것을 의미								
	업무추	진비 절감느	c력도(%)	=	스진비 결신 스진비 기준	X	100			
산정공식	- 기관운 ^c ※ 기 20 반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6. 12. 31 기준이다 2016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 반영 ※ 2016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표 미제출시 2015.12.31 기준으로 								
측정시점(기간)	2016회	계연도 결식	\- I	아료산출 리부통계)	e호2 직접	전 입력				
지표특징		시 : 거시? 평가지표,		에 공유지	II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	이 낮은 것	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	계, 기타특	별회계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단위 : 원								
	업1	업무추진비 결산액(A) 업무추진비 기준액(B)								
제출서식	소계 (A=a+b)	" 영무추시비 영무추시비 " 영무추시비 영무추시비 (A/D)								
	일반회계									
	기타특별			기타특별	직접입력	직접입력				
	※ 기준	액은 자치던	난체 직접	입력, 결석	산액은 e호	조로 산출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시달 업무추진비 기준액과 업무추진비 결산액 증빙자료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금액 관련 업무추진비 편성직위의 적합성 기준금액 관련 2016년 중 조직개편에 대한 증빙 자료, 결산서 부속서류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8.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감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출 중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건			남소할수록 전년도 대비 비율이 -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 행사·축제경비 증 (2016년도 행사·축저 2015 ※ 행사·축제 관련 47 - 행사운영비(201-03), 현	감률(%) = 경비비율-2015년년 년도 행사·축제경 개 과목 사실비보상금(301	-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산정공식	체전·전국소년체전 제외 : 증빙자료 첨 포함) - 기재부 인정 국제행사 - 기타 행사·축제의 경 ※ 2016년 결산은 정- (시도)규모 순회행 산정상 예외로 인 ⁷	· 국제행사, 문체· · 전국장애인체 부(단, 사후평가에 , 문체부 인정 축기 우, 국비와 지방비 부 또는 시·도 시 사(박람회, 도민체 성	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 전 및 행자부 인정 행사축제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예행사 목록은 행자부에서 통보 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책에 협조하여 개최하는 전국 육대회 등) 등*은 행사·축제
	협약 당사국총회 ※ 2017년 결산부터는 기재부, 문체부에서 행사(박람회, 도민) 의하여 총액한도에 ※ 일몰제가 적용되어 받지 않기 위해 전 새로 전국축제로 인 차이 점수 산정	등 도입 예정인 행사 인정한 행사·축 세육대회 등) 등은 서 제외 비용이 발생한 축자 년도 데이터에 기 정받은 경우에는	별정상회의, 강원도 생물다양성 나·축제 총액한도제와 연계하여 제 외에 전국(시도) 규모 순회 는 행자부(시군구는 시도)와 협 네의 경우, 점수 산정시 불이익을 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다만, 전년도 데이터에서도 삭제하여 제였다가, 2015년도에 일몰제
			h, 다시 2016년 심사에서 계산

	1										
	-	제외대상 축제가 된 경우 2015년도 점수 산정시= 2014년도에 제외되었던 축제금액을 포함한다음 2015년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2016년 점수 산정시= 2015년도에 포함되었던 축제금액을 제외한다음 2016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축제가 시행된 경우, 점수 산정 시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전 축제년도(2년 혹은 3년 전) 데이터에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측정시점(기간)		14~201 <i>6</i> 추세 피	5회계연도 악)	. 결산	자료신 (외부통		e호조 직접입력				
지표특징			: 미시적 민관심지3		1부세 공	유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	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	반회계,	기타특별	회계							
	1. 3		제경비 비			I		(단위: 원)			
		20	16년 행사·₹	축제경비(a)	1	 제외대상	2016년	지표값(%)			
	계 (a)	201-03 (행사 운영비)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행사축제경 (b)	_	A=(a-b)/c× 100			
		20	15년 행사·	축제경비(d)	•	ال المالية	2015:3	-1 == 1 (0 \cdot)			
제출서식	계 (d)	제 201-03 301-10 307-04 401-04 행사축제경비 세출 B=(d-e)f×									
		2014년 행사·축제경비(g) 제외대상 2014년 지표값(%)									
	계 (g)	201-03 (행사 운영비)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307-04 (민간행사 보조)	401-04 (행사관련 시설비)	해사축제경 (h)		C=(g-h)/i× 100			

	_	-11 x1 =	الباحالج	スカロ						
	2.	앵사⁺=	축제경비 -	승감률				4	-1.6161	
								(단위 : 원)	
	2016년 행사·축제경비(a) 제				제외대상	2016년				
	계	201-03	301-09	307-04	401-04	행사축제	세출	A=(a-b)/	지표값	
	(a)	(행사	(행사실비	((행사관련	경비(b)	결산액	c×100	(%)	
	(4)	운영비)	보상금)	사업보조)	시설비)	0 ((*)	(c)		(,,,,,,,,,,,,,,,,,,,,,,,,,,,,,,,,,,,,	
			- , -, ,							
제출서식			15년 행사・		101.01	제외대상	2015년			
세월시년	계	201-03	301-10	307-04	401-04	행사축제	세출	B=(d-e)/	{(A-B)/B}	
	(d)	(행사	(행사실비	((행사관련	경비(e)	결산액	f×100	×100	
		운영비)	보상금)	보조)	시설비)		(f)		-	
		201	 4년 행사·₹	 초계거비(a)		2014년				
		201-03	301-10	307-04	401-04	제외대상	2014년 세출	C=(g-h)/	,	
	계	(행사	(행사실비		(행사관련	행사숙세 결사애	i×100	{(B-C)/C}		
	(g)	운영비)	보상금)	보조)	시설비)	경비(h) ^{글 년 ¬} (i)			×100	
			/							
	20	14 201	(취계서도	- 110111	ネガ カカ	비스기를	1			
			6회계연도			구목시위	ें विष्	락처		
			증시 확인					' '		
	•	기재부기	가 인정하	는 국제형	J사, 문체·	부가 인정	3			
검증자료		하는 축	·제 행사,	행자부	인정 축기	제행사 및]			
		전국체경	선 전국소	년체전•7	선국장애역	기체전 등	작 작	성자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인체전 등 게이 경비 항이 (다. 사호명간에 따르 제계						부서)		
		제외 경비 확인 <u>(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u> (삭성무서) 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u> 소시글</u>	받는 앵/	가는 쓰임	1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는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반영되어 있음

	제외대상 행사·축제경비(b, e, h)											
계	기재부 인정	문체부 인정	전국체전/소년체전/장애인체전	행자부 인정								
b												
e												
h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경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세출												
개요(정의)			위탁금으로 탁금 비율					기 위하여 전년							
해석 및 특정	ડ <u>ો</u>		위탁금으로 재정운영					r소할수록 자치							
산정공식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016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도 민간위탁금비율) 2015년도 민간위탁금비율 x100												
		※ 민	※ 민간위탁금(307-05)												
측정시점(기간	<u>'</u> })	2015	2015~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e호조 (외부통계) 직접입력												
지표특징			/미시 : 미/ : 일반지표		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		지표	값이 낮은	것이 바람	 직										
대상회계		일반	회계, 기타	특별회계											
		민경	간위탁금비율	울증감률				(단위 : 원)							
		2016년	!도 민간위탁금	-비율(A=a/b	2015년	l도 민간위탁	급비율(B=c/d)	지표값(%) {(A-B)/B}x 100							
제출서식		-un	2016년 민간위탁금 (307-05) (a)	2016년 세출 결산액 (b)	II	2015년 민간위탁금 (307-05) (c)	2015년 - 세출 결산액 (d)								
		세 일반 회계 기타 특별	계 계 일반 일반 회계 회계 기타 기타												
カスポコ		2015 서류	5~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신	·서 부속	연락처								
검증자료			<u>장검증시</u> 혹 입세출결산			남금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20. 재정법령 준수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페널티												
개요(정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ト도록 유도하며,									
	• 점수부여 기준 : 결산연	도 기준 법령위	반										
	평가내용 배점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가?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을	가?											
	- 지방재정	위반	건수 X -2점										
	- 보조금관리에 관												
	- 지방계약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건수 X -2² - 지방계약법 위반 위반건수 X -2²											
	- 지방회계	법 위반	위반	건수 X -2점									
	- 재난관리기금			막보시 - 5점									
	- 지역상생발전기		미호	박보시 -5점									
	-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음 0점												
평가방법	※ 법령위반 사례 - 지방재정법 위반 : 기관(집행부적정, 자활기금 미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국고보조금집행 및 관리- 지방회계법 위반, 지방계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대비 2016년도 지역상생 * 정부합동 감사(감사실수감시 재정관련 법령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반영	상환융자금 관리반 : 국고보조금 부적정 등 약법 위반 추가 보통세 수입결 상 비율이 1%가 확보: 2016년도 발전기금전출금 시연도 기준), 감 위반사항 목록은	부적정 등 목적외 사용, 도 산액 3년 평균 되지 아니할 때 지방소비세 실기 비율이 35%가 : 사원 감사(처분 · 행자부에서 통	폐기물처리시설 대비 2016년도 제수납액의 5% 되지 아니할 때 요구연도 기준)									
	※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1%가 법정기준임) 재난관리기금전출금비율 = $\frac{2016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2, 2013, 2014) 평균 × 100($												

	최근 3년 계산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 재난관리기금을 즉 ② 제1항에 따른 재 동안의「지방세법 100분의 1에 해당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급 상생발전기금비율 = 20 2016년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급 ② 1016년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급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납입된 지방소비서	2015년 결산이 끝 월이 1%가 되지 법 제67조(재난곤 바난관리에 드는 비 립하여야 한다. 난관리기금의 매니 나관리기금의 매니 나관리기금의 매니 하는 금액으로 한 금비율 (35%가 법 이16년도 지역상생 도 지방소비세 실제 를 비율이 35%가 기본법 제17조의의 조성한다. 역시·경기도의 출 고려하여 대통령 (출연금) ① 법 저 한 지방자치단 생을 말한다. 상 연도 출연금의 35 나음 연도의 추가경 나음 연도의 추가경	같나지 않았으므로 2014년부터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난리기금의 적립)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친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난다.									
측정시점(기간)	2016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감사결과 법령위반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준법성지표,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법령 의무규정 이행											
대상회계	일반회계											

	지방재정 관	련 법령	병 위반	-						
	구분		반 총 B+C+D+			지방재경 반 건속			조금관리에 률 위반 건	
	2016년	즈	집입력			직접입	력		직접입력	
	구분	지' 위빈	-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E)						
	2016년	조	시접입력			직접입	력			
	재난관리기금	}전 출 금	감비율						(단위: 원)
	2016회계연도			보통세	수입점	결산액	평균연액			지표값 (%)
제출서식	적립 재난관리기금	평균		2014회계연도		.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A/B)
	전 출금 A	B (@+b)		보통세(111) ®		보통세(111) ⑤		보통세(111) ⓒ		× 100
	직접입력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비율									단위: 원)
	2016회계연 지역상생발전 전출금 (<i>f</i>	기금 2017년 6월 3 크가 저사이			^{]일까시} ス		2016회계연도 지방소비세 제수납액의 5%(C)		지표집 {(A+B)/C	
	직접입력 (서울, 인천,			시접입력 인천, 경	[7])	- "	<u> </u>	.(0)	(()/	,
	※ 현지실시									
	2016회계연 에서 법령위	반으로	지적된	된 사항		감사	연락기	₹		
검증자료	※ 현장검증▶ 해당 법령확인				서 등	자료	작성기 (작성부			

21. 재정공시 노력도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지표내용 인센티브										
개요(정의)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주단 하기 위한 지표	<u> </u> 인의 접근성 향상	을 위해 노력한	한 활동을 평가							
해석 및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투명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u></u>										
	재정공시 노력도 (10점) 평 1. 공시방법·수단*의 다양	 가내용 탄성		배점							
	*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리플릿, 공보,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 4개 이상			5점							
	- 3개			4점							
평가방법	- 2개			3점							
0/10 H	- 1개			2점							
	2.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		5점							
	-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	2점									
	-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전 신문고 등 연계	<u>민</u> 2점									
	- 홈페이지 상 용어해설 저	게공		1점							
	※ 현지실사 시 재정공시※ 2016회계연도 재정공/		검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재정공시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개정공시의 주민 접근성	향상									
대상회계	일반회계										
	재정공시 노력도										
제출서식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경	증진 노력	점수							
세물시식	직접입력 (공시방법, 수단)	직접약	입력								
	2016 회계연도 재정공시 기	자료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작성자								
	▶ 재정공시 노력도 평가항	목 관련 서류 준	비 (작성부서)								

22. 재정분석 대응도

지표분류	재정책임성	페널티									
개요(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어 기한 준수 및 자료입력의 정			자료입력							
해석 및 특징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어 단체의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 페널티 부여										
	재정분석 대응도 (-5점)										
	평	가내용		배점							
	1. 자료입력 기한을 준수	하였는가?		-2점							
	- 준수			0점							
	- 미준수			-2점							
평가방법	2. 입력된 자료가 누락, ડ	2류 없이 정확한기	-?	-3점							
	- 예			0점							
	- 아니오* * 의회경비오류, 직접입력지표 통계누락, 세출결산액 누락, 입력기한 외 수정요청 등										
	※ 현지실사 시 자료입력		자료누락, 오류	사항 점검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재정분석 입력	자료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책임성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분석 자료입력 기한	준수 및 정확성									
대상회계	일반회계										
	재정분석 대응도										
제출서식	자료입력 기한 준수 여투 직접입력 (준수/ 미준수 기재)	직접 (누락, 오류	-락, 오류 사항 입력 사항 기재)	점수							
	※ 현지실사 시 자료 입력 2016회계연도 재정분석 데		어크l-əl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자료입력 기한 준수 여부 누락, 오류 내역 확인)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재정분석 참고지표

- 1. 지방채무잔액지수
- 2. 지방채무상화비비율
- 3. 관리채무부담비율
- 4. 관리채무상환비율
- 5. 장래세대부담비율
-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8. 예산집행률
- 9. 의무지출비율
- 1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11. 행정운영경비비율
- 12. 자본시설지출비율
-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 15. 실질수지비율
- 16. 인건비 집행률
- 17. 결산대비금융부채비율
- 18. 기금정비율
- 19. 기금미수채권비율
- 20. 일자리사업 지출비율
- 21.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1. 지방채무잔액지수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니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지방채-	구 현재액	의 비율을	측정ㅎ	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천 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하는 지표로	그ㅂ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지방채무잔액지수(%) :	= 지방채 일반재유	무 잔액 실 결산액	× 100)					
산정공식	※ 지방채무잔액은 (구)지까지 적용)에 따른 진 ※ 일반재원 : 결산서상 ⇒ 지방세(지방교육세 +시군조정교부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 지방교부세는 보통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 ※ 지방채무 잔액 : 채무 ⇒ 지방채 증권+차입 ⇒ 시·도의 경우 지역 ⇒ 기금의 조성을 위 ⇒ 지방채무 잔액은	액임 세입 결산 제외)+세 석 세외수약 등, 특별, 년 나자에 해당 결산보고/ 금 + 채무 육개발채권 한 지방채	난부문의 실 외수입+지병 입과 임시조 부동산교부/ 하는 일반기 서 작성기준 부담행위+5 ! 발행액도 발행액도	제수\ }교부 세외 베를 내원고 의 지 보증차 지방	납액 세+자치구조정교부금 비수입을 모두 포함 모두 포함 ト 동일한 범위를 포괄 방채무 범위와 동일 무이행책임액 채무의 범위에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 (외부통기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ㅂ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	타특별회계	레, 공기업특	투별호	계, 기금회계)					

	지방치	내무잔약	백지수	(구분	가능한	<u>.</u> 회계	까지	만 구	분)					
	(단위:원)													
		2016	지방채	무 잔	백(A)	2	2016	일반자	원 결	[산액(B)		지표		
	구	계 A =	지방채 증권	채무	보증	계 B=	지	세 외	지 방	자치구 조정	시간	값 (%)		
제출서식	분	(a+b) +c)	및 차입금 @	부담 행위 ⓑ	채무 이행액 ⓒ	(e)+f) +g)+h) +i)	방 세 @	수 입 (f)	교 부 세 ®	고 * 교부 금 (h)	조정 교부금 (i)	(A/B) × 100		
	합 계								(8)			100		
	일반회계	1月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금													
	20163	회계연의	도 세일	』세출	결산서	, 채무	결산.	보고/	네	연락처				
검증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작성부서)												

2.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일반재원 대비 과거4년 및 미 지표	래4년 간 지방치	내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		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율이 을 의미함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100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과거4년 : 2013, 2014, 2015, 2016년, 미래4년 : 2017, 2018, 2019, 2020 ※ 채무상환액 및 일반재원결산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4'											
산정공식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띠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는 값임 결산부문의 실: 외)+세외수입+> 식수입과 임시적 별, 부동산교부> 해당하는 일반	제수납액 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세를 모두 포함 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측정시점 (기간)	2013~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	丑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	회계, 공기업특	별회계, 기금회계)									

		지	방채무	상환비	비율	-										
															(단위	: 원)
		과	거4년+1	기래4년	간 지병	방채무	상환역	박(A)	과거	4년+	미래	4년간	일반제	내원결석	난액(B)	
		과거4년					미래				과거	4년		미래		
	.,	순지방비(a=1+2		2+3)		시도	4년	계			지	자치	시군	4년	지표값	
제출	서식	계 A= (1+d)	채무 상환액 (1)	조기 상환액 (2)	차환 액 (3)	국비 지원 상환 (b)	нl	지방 채무 상환액 (d)	B=e+ f+g+ h+i+j	지 방 세 (e)	세 외 수 입(f)	방 교 부 세 (g)	구 조정 교부 금 (h)	조정 교부 금 (i)	일반 재원 결산액 (j)	(%) (A/B) ×100
				기 나중).	가능	가능	* 기초									
			2010	가능한 경우	한 경우	한 경우	단체 만									
							해당									
			.3~201 ^{친고서}	6회계	연도	세약	입세출	출결산서], 채·	무		연락	처			
검증	자료	▶ 서						친고서	내용	과		작성 성투				

3. 관리채무부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지방채무현재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지표											
해석 및 특징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 을수록 재무 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산정공식	관리채무부담비율(%) = - ※ 2016년 지방채발행 총액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 교부금+시군조정교부: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 ※ 지방채무 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차 → 자치단체의 일반·특별을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 ※ BTL 지급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소속	경상일반 한도 산정방식과 에외)+경상세외=금 외수입 내무부담행위+보 회계·기금이 그 기준으로 작성 사권이 이전된 시	· 동일 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	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관리차	무부덤	}H]=	울_										
	(단위:													위: 원)
		2016 지방채무 잔액(A) 2016 경							6 경4	령상일반재원 결산액(F			(B)	지표값
제출서식	구	계 A = (ⓐ	지 방	차	채무	보증 채무	BTL	계 B = (①	지	경상	지 방	자치 구	시군 조정	(%)
	분	+b +c	채 증	입 금	부담 행위	세구 이행 액	지급 액	+(g) +(h)	방 세	세외 수입	부	조정 교부	교부금	(A/B) ×
	-	+@ +@)	권 ®	Ъ	©	(d)	e	+(i) +(j)	(f)	g	세 (h)	금 (i)	j	100
	합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 기 업 특별회계													
	기금													
	2016ই	계연되	근 서]입서	레충결	사서.	채무	-결산)	보고	서	연택	막처		
검증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서 연락저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작성자 ▶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과 일치여부 (작성부서)													

4. 관리채무상환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 지표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측정하 지표									
해석 및 특징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5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함									
산정공식	제외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 미래4년 상환할 평 * 기준일 현재 지 상환액 산정, 이지 채무상환액에 합 ⇒ 평균 경상일반재원	상환할 평균관리 재원의 평균수입 2018, 2019, 2020 등액한도 산정식과 + BTL지급액 흥 제외)+경상세오 금+시군조정교부급 세외수입 은 조기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 당균채무액 : 미리 방채무 잔액을 가 나액은 과거 4년 평산 수입액 : 미래 41	액)년 가 동일 · · · · · · · · · · · · · · · · · · ·								
측정시점(기간)	2017~2020회계연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채무결산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ㅂ	·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	타특별회계, 공기	업특별회계, 기금회계)								

	관i	의채무	상환	비율								(단:	위 : 원)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A) 미래 4년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B) 미래 4년					
제출서식	계 A =(1)	순지병 채무 상환 액 (1))비(a=1 조기 상환 액 (2)	, ,,	국비 지원 상환 (b)	시도 비 지원 상환 (c)	계 B= e+f +g+h +i+j	지 방 세 (e)	경상 세 외 수입 (f)	지 방교 부 세 (g)	자치 구 조정 교부 금 (h)	시군 조정 교부 금 (i)	(%) (A/B) ×100
						*기초 단체 만 해당							
검증자료	보고/ <u>※</u> 현 ▶ 서	너 <u>부장검</u>	증시 출결신	<u>확인</u> /	사항(v)	서, 채 ¹ 고서 1		라 ;	연락 작성: 작성:	자		

5. 장래세대부담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 • . –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								
산정공식	※ 유형고정자산 : 일반-※ 부채합계 : 복식부기	장래세대부담비율(%) = 부채합계 유형고정자산 × 100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측정시점(기간)	※ <u>기타비유동부채는 통</u> 2016회계연도 결산	<u> </u>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 특성 : 일반지표, 주민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	타특별회계, 공기	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장래세대	내부담	비율							
										(단위:원)
			부채	총액(A)			유형고	정자산(B)	- 지표값	
	구분	계 A= a+b	유동 부채 (a)	장기 차입 부채 (b)	기타 비유동 부채	계 B= c+d+e	일반 유형 자산 (c)	주민 편의 시설 (d)	사회 기반 시설 (e)	(%) (A/B)× 100
	합 계									
제출서식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회계									
	내부거래 (△)									
	※ 기타	비유동	부채는	는 통계	관리 5	극적상	자료입	력 요망		
	2016회계 ※ 현장기	남증시	확인	사항(🗸	<u>')</u>			연락처		
검증자료	 ▶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확인 									

6.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	선성		지표내용		참고지	II			
개요(정의)	해당연도 세	입예산(당	초)	대비 채무지급	보증	총액을 측정	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입예산(혹, 지표로 그 값(것으로 판단			채무지급보증 수록 향후 재 ⁷						
산정공식	세입예산대비치	세입예산대비채무보증액비율(%) = <mark>채무보증 총액</mark> × 100 세입예산(당초)								
		※ 회계범위 : 일반, 특별(기타, 공기업), 기금※ 보증범위 : 지방재정법상 지급보증 및 예산 외 부담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5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e호조 (외부통계)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	은 것이	바람	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	반회계, 7	기타트	· 불별회계, 공기	업특별	별회계, 기금회	 회계)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두	<u>-</u> 총액	비율			(단위:원)			
제출서식	우발채무 총액(A=a+b)	보증 채무액 (a)		예산외의무부담액 매입확약/토지리태 /기타) (b)	런제	세입예산(B)	2016년도 지표값(%) (A/B*100)			
	※ 해정자치부									
	2016회계연도	. 복식부7	'l 결	산서 및 별도		.1=1-1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결산서 확인 ▶ 지급보증, 예산외 부담 등 작성자 (작성부서)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	2지표							
개요(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하는 지표	사업비의 당해연	<u>!</u> 도 사업예산 빈	·영 비율을 측정							
해석및특징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100%에 근접 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100									
선생중식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 계획(2016~2020)의 2※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시설 복구비를 집행함	2016년 사업예신 등으로 인해 중기	·총액(예비비포학 지방재정계획에	함)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최종예	산 자료산출 (외부 통 계	- 시설이란	1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ス 특성 : 일반지표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100% 달성	및 근접할수록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	계, 공기업특별회	회계								
	중기재정계획반영비	<u> </u>		(단위 : 원)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		재정계획의 사업비								
	A=(a-b) - · · · · -	제,재해 B=(c+d)	0 "	지표값(%) (A/B)×100							
제출서식		접입력 일반회계 접입력 기타특별 접입력 공기업	직접입력 직접	합입력 합입력 합입력							
	긴급시설 복구비를 ※ 공기업특별회계 정최	 ※ (b)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작성 ※ 공기업특별회계 정책사업비 = 총예산-총액인건비-(201-01~02, 202-01~02, 720, 730, 220) 									
검증자료	2016년도 세입세출여 ※ 현장검증시 확인사현 ▶ 중기지방재정계획(20	}(√)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8. 예산집행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되지	王내용		참고	지표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당하 비율을 측정하는		ll산편	성 기준의	으로 실	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해석 및 특	징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남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예산집행률(%) = $\frac{세출결산액}{예산현액} \times 100$										
		※ 세출결산액	※ 세출결산액 : 세출지출액									
측정시점(기	간)	2016회계연도 경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e호조 (외부통계) 세입세출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 특성: 일반지표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일반지표									
목표 (바람직한 상	태)	100% 달성 및	근접할수	수록 1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	기업특별	회계						
		예산집행률						(단위 : 원)				
		회계명	회계-	수	세출결신 (A)	·	예산현액 (B)	비율(%) (A/B)×100				
제출서식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검증자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세입세출결산서 상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확인										

9.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	d효율성	\$	지표니	용	참.	고지표				
개요(정의)	세출결	산 대비	의무지출	의 비율로	재정운역	경의 경직도	를 측정さ	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세출결산액에 대한 의무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의무 세출경 2 이무	1. 의무지출비율(%) = 의무지출 세출결산액 2. 의무지출증감률(%) =									
산정공식	(2015 ※ 의무 부담 이자	2. 의무시출증감율(%) = (2015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2014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측정시점	소성	조정교부금(308-04)(광역), 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자료산출 e호조									
(기간)	2015~2	2016 회계	ᅨ연도			e호조 세입세출경	불산서 부	속서류			
지표특징	거시/ㅁ	시 : 미/	시적 지표	Ē	·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	이 낮은	것이 바	람직							
대상회계	일반회	계, 기타	특별회계								
	1. 의무	지출비율						(단위:원)			
			의무지층	출 결산액(A)							
계츠셔시	계	인력 운영비 (a)	기본경비 (b)	국도비 사업비 (c)	의회비 (d)	차입금 원금상환 (e)	세출	지표값			
	(A=a+b +c+d+e			직접입력			결산액	(%) (A/B)			
	+c+d+e +f+g+h +i+j) 차입금 이자상환 (f)		시군조정 교부금 (광역) (g)	자치구 조정교부금 (광역) (h)	상생 발전기금 (광역)(i	.	(B)	×100			
					직접입력	격 직접입력					

	2. 0	무지	출증감	률								(r 1	٥١. ٥١)
				회계연도 결산액(2015 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액(B)						위: 원)
제출서시	계	인력 운영 비 (a)	기본 경비 (b)	국도비 사업비 (c)	의회 비 (d)	차입 금원 금상 환(e)	계	인력 운영 비 (k)	기본 경비 (l)	국도비 사업비 (m)	의회비 (n)	차입금 원금 상환 (o)	지표값
제출서식	(A=a +b+c +d+e			직접 입력			(B=k +l+m +n+o			직접 입력			(%) {(A-B) /B}
	+f+g +h+i +j)	#h+i 금 조정 사 금 교부 이자 금 교 상환 (광역) (공	자치구 조정 교부금 (광역) (h)	상생 발전 기금 (광역) (i)	재난 관리 기금 전출 금(j)	+p+q +r+s +t)	차입 금 이자 상환 (p)	시군 조정 교부금 (광역) (q)	자치구 조정 교부금 (광역) (r)	상생 발전 기금 (광역) (s)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 (t)	×100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입 력	
				연도 <i> </i> 확인사			산서 -	부속서	류	연락처	1		
검증자료	▶ 세입세출결산서 상의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10. 정책사업투자비비율

지표분류		재경	재정효율성							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정책	사업비	비에	서 ㅅ	l설i	ابح	사산	취득	비]	등	투자	지출	0) 7	사지	하는 1	비율
해석 및 특정	}	지표 판단	값이 -	노을	수록	- 자	본형	성을	위학	한 트	투자:	지출	이혼	나대도	고	있는 7	것으로
산정공식		* 투 ⁷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측정시점(기간	<u>}</u>)	2016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e호조 (외부통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정초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회계구분 추가) (단위 : 원)														
							-	투자기	시출인	(A)							
		회계	소계	,	자본 <i>지</i> (40	. — .)	융자및출자(b) (500)			(b)	> 공사공단 자본전출금(c) (404)			정책 사업	지표 값	
제출서식		구분 - 구분	(A=a +b-c)	계	행정 운영 비	재 무 활 동	정 책 사 업	계	행 정 운 영 비	재 무 활 동	정 책 사 업	계	행정 운 영 비	재 무 활 동	정 책 사 업	비 결산 액(B)	(%) (A/B) ×100
		일반															
	기타 특별																
		공기업															
		※ 투자기출액 : 자본기출(400)+융자및출자(50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제외															
		* ′	※ 정책사업비 : 결산서 부속서류의 사업구분별 정책사업비														

건조기 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검증자료	▶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정책사업비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11.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	율성	7	디표내용		참고지	I			
개요(정의)		행정조직 증감 상태				관리비용의	의 적정비원	율 및 연도간			
해석 및 특정]	행정운영 절감 노력(을 위한	비용이 낮	을수록 경비			
산정공식		행정운 ⁽ 2. 행정운	1. 행정운영경비비율(%) =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세출결산액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 (2016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 2015년도 행정운영경비결산액) 								
			l운영경¤]: 인력운	행정운영경 2영비와 기-	본경비의	합계				
측정시점(기간	<u>+</u>)	2015~20 결산	16 회계약	면도	자료산출 (외부통계)			서 부속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	ļ이 바람	직						
대상회계], 기타특								
		1. 행정운	영경비비	율				(단위: 원)			
		계 (A=a+b)		비 결산액(운영비 (a)	(A) 기본경비 (b)	- 세출결신 (B)		日垂값(%) A/B)×100			
제출서식		2. 행정운영경비증감률 (단위: 원									
		I)16 회계연. 2·영경비결선 기본경비 (a)					지표값(%) {(A-B)/B} ×100			

7) Z 7) 7	2015~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연락처	
검증자료	▶ 사업예산 결산서 상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조직 및 정·현원 현황표▶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관련자료	작성자 (작성부서)	

12.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	田					
개요(정의)	정책사업비 대비 자본시설지출의 비율로 사회기반시설 형성을 통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	정책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지출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으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 자본시설지출비율(%) = 시설비지출액 정책사업비 × 100									
산정공식	2.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2016년도 시설비지 2015	률(%) = 출액 - 2015년도 5년도 시설비지출	시설비 <i>7</i> 액	지출액) ×	100					
	※ 시설비지출액 : 시설	비 및 부대비(40))							
측정시점(기간)	2015~2016 회계연도 결산	, , =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 특성 : 일반지표]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1	바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	계								
	1. 자본시설지출비율				(단위 : 원)					
	시설비지출액(A)	정책사업비(B)			값(%))×100					
제출서식	2. 자본시설지출 증감	률			(단위 : 원)					
	2016년도 시설비지출액(A) 2015년도 시설비지출액(B) 지표값(%) {(A-B)/B}×100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형▶ 정책사업비 확인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정책사업비 확인 ► 시설비및부대비(401) 확인 (작성부서)								

13.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결산에서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유형고정자산 대비 7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u>자본시설유지비용</u> 유형고정자산	× 100(%)					
산정공식	(2016년도 자본시설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2016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2015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2015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100					
	※ 유형고정자산: 일반	※ 자본시설유지비용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자산(토지 및 건설 중 자산 제외), 주민편의 시설(토지 및 건설 중 자산 제외)					
측정시점(기간)	2015~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 특성 : 일반지표	식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	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1. 자본	시설유지	관리비	비율	(3	미계구분)			• 2 • 2
							(단위 : 원)				
		7	자본시설유.	지비용(A)			유형고정자산(B)				- 지표값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연료비 (b)	전기 (c	요금 c)	계 (B=d+e)	건설경		주민편의 시설(토지및 건설중자산 제외)(e)	(%) (A/B) ×100
	-11 -5 x 1 x 1										
	제출서식		2.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회계구분)						(단의	위 : 원)	
		2016년도	. 자본시설-			2	015년도	자본시/	설유지	비용(B)	지표값
		계 (A=a+b+c)	수선 유지비(a)	여근비	전기 요금 (c)	⊅ (B=d-	#e+f) 유	수선 지비(d)	연료 ^ㅂ (e)	(f)	(%) {(A-B) /B}×100
2016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연락처 전기요금은 e호조에서 확인									연락처		
검증자료 <u>※ 현장검증시 확인사항(✔)</u> ▶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확인 일반유형자산 ^{작성지}							작성자 (작성부서)				

14. 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이 점하는 비중 및 증감상황을 측정하는 기							
해석 및 특징	지 고정순자산은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등 고정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으로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음							
산정공식	2015년도	산 × 100 계 * *증감률(%) = 고정순자산 - 2015년도 고정순자산 2015년도 고정순자산 * 계연도 재정상태표의 고정순자산						
측정시점(기간)	2015~2016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복식부기 결산서 (재정상태표)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	타특별회계, 공기'	겁특별회계, 기금회계)					

	1. 고정순자산비율				
					(단위 : 원)
	2016년 고정순자산(A) 2016년 순자산 총계(B		작산 총계(Β)		
	2. 고정순자산증감률				(단위 : 원)
	2016년 고정순자산	_	2정순자산		五 값(%)
제출서식	(A)	(I	3)	{(A-	B)/B}×100
	※ 2016회계연도 재정※ 2015회계연도 재정▶ 고정순자산증감률				
	연도		고	정순자산 증	감률
	2016년				
	2015년				
	2016회계연도 복식부	기 결산서	중 재정	연락처	
검증자료	상태표 <u>※ 현장검증시 확인사항(✔)</u> ▶ 복식부기 재정상태표 상의 2015년괴 2016년의 고정순자산 확인		1 (1 -1 -1 -1	작성자 성부서)	

15. 실질수지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파악하기 위해 일반재원결	년산액 대비 실질·		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측정하는 분석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액 일반재원결산액 × 100								
산정공식	※ 실질수지액: 세입결* 이월금: 명시이월※ 일반재원: 결산서상	+사고이월+계속 세입 결산부문의	비이월 의 실제수납액						
	교부금+시군조정. ⇒ 세외수입은 경상? ⇒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금 석 세외수입과 은 통, 특별, 부동산	수입+지방교부세+자치·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교부세를 모두 포함 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포함					
측정시점(기간)	2016 회계연도 결산	자료산 (외부통							
지표특징	거시/미시 : 미시적 지 특성 : 주민관심지표,		다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ㅂ	 라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기	레							
	실질수지비율]수지액(A)		교값					
제출서식	계 세입결산액 (A=a-b-c-d) (a)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이월급 (b) (c) 직접입	금 보조금집행 잔액(d) 결산액 (A) >	(%) A/B) ×100					
	기타특별회계								
거즈기구	2016회계연도 세입세章 ※ 현장검증시 확인사형		연락처						
검증자료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등 확인	이월금, 보조금	· 작성자 (작성부서)						

16. 인건비 집행률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	용	참고지	II				
개요(정의)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비교하여 기준인건비를 실제 얼마나 절감하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산정공식	※ 총액인건비 기준액 : 기준액(기준인건비 7 2014년 3월 법 개정	인건비 집행률 (%) = (인건비 결산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 X 100 ※ 총액인건비 기준액: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한 기준인건비 기준액(기준인건비 기준액: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보) 2014년 3월 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소방직 인건비는 제 ※ 기준인건비 대상 과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목(7개 항목) 계약근로자보		L조비, 성과신 	상여금, 연금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e호조 직접입	력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보통교부세 공유 ※ 기준인력을 준수하지	지표	· 값이 양호:	해도 인센티브	브 적용 제외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	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	^멸 회계						
	인건비 집행률				(단위 : 원)				
	2016년도 인건비 결산 반영액(A)	2016년5	こ 기준인건비	기준액(B)	-1 T -1 (0/)				
제출서식	반영액 인건비 소방직 (A=a-b) 열산액 인건비 (a) (b)	1 바닷애	기준인건비 (c)	소방직 기준인건비(d)	지표값(%) (A/B)X100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2016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시달 기준인건비 기준액	연락처	
검증자료	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준인건비 기준액과 기준인건비 결산액 확인 ▶소방직 인건비 현황 등 확인	작성자 (작성부서)	

[※] 실제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할 때에는 지표값 산정공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7. 결산대비 금융부채비율

지표분류		재정건전성	지표내용		참고지표	
개요(정의)		세입결산 대비 금융부>	세입결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저량(stock)			
해석 및 특징]		세입결산액 대비 현금지급의무가 있는 금융부채! 지표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			
		채무 부담(확정액)	잔액 + 미지급;	금 + 치	× 100 거무부담행위(발생) + 보증	
산정공식		에서 차입·상환하 ⇒ 지방채발행잔액은 ※ BTL 지급액 ⇒ 준공후 자치단체로 으로 향후 민간사연 지급할 금액	백 및 재정지원 특별회계·기금여 는 금액은 제외 원금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 업자에게 지급의	금 미기 그 기 작성 된 시 무가	지급금 등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 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 생긴 총액중 순지방비로 은 행정자치부 통합부채	
측정시점(기긴	<u>ŀ</u>)	e호조 자료산출 채무결산보고서 (외부통계) 복식부기 재정상 통합부채현황보고				
지표특징		거시/미시 :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심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대상회계		통합회계(일반회계, 기	타특별회계, 공	기업특	-별회계, 기금회계)	

_											
		결산대비	금융부	L채비율						((단위:원)
					2016 금-	융부채(A)					
		구 분	계(A = (a)+(b)+ (c)+(d)+ (e)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	BTL 지급액 ⑤	재정지 원금미 지급금 등 ⓒ	채무 담행 (발생 (합	위 생) (혹	보증채 무부담 확정액) ⁽⁾	2016 세입 결산액 (B)	ス (%) (A/B)×1 00
	제출서식	합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 기 업						+			
		특별회계									
		기 금									
		※ BTL 지 동작업			원금 ㅁ]지급금	등은	- 행	정자치	부 통합	납부채 합
		2016회계						Ó.	년 락 처		
	コスココ	보고서, 복	식무기	새성상	캐趎, 동	'압무재'	연왕				
	검증자료	보고서	フィレシ	ر دار دار	<i>(</i> 4)			ス	∤성 자		
		<u>※ 현장검</u>						(작	성부서])	
1		▶ 금융부치	새 항복	금액 욕	작인						

18. 기금정비율〈신규〉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						
해석 및 특징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대	비 기금 총액	의 비율이 날	,) 수록 바람직			
	기금정비율 (%) = <u></u> 일	반회계	기금총액 통합재정수약	× 1 및 총액	00			
산정공식	* 기금전출금: 기금결산 * 일반회계 통합재정수 총액			통합재정에서	통합재정수입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보고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자치덕		습지표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	람직						
대상회계	기금회계							
					(단위: 백만원)			
제출서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7	기금총액(B)	(1	지표값(%) B/A) X 100			
	직접입력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검증자료	▶ 기금결산서: 기금총 [©]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기금총액 ▶ 통합재정: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작성부서)						

19. 기금미수채권비율〈신규〉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지표내용	참고지표(예고	<u>1</u>)
개요(정의)	기금 중 미수채권총약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		기한도래 채권과의 ㅂ]융자성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자신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		·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값이
산정공식	미수채권비율(%) = 100) - (기한도래 치 해당연도까지	권중 미수채권총액 기한 도래된 채권액	– ×100)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복식부기결산 (결산서 재무제표 첨부서류)	
지표특징	거시/미시: 미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자치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	람직		
대상회계	기금회계			
			(단위:	백만원)
제출서식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총액 (A)	해당연도 이행 기 도래 채권액(B)		
	직접입력	직접입력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결산서 재무제표 첨 ¹ ▶결산서 재무제표 첨 ¹ 채권액	ㅡ 부서류: 미수채권충	1 ' 1' 8'-1	

20. 일자리사업지출비율〈신규〉

지표 분 류	재정효율성	지	표내용	참고지표	표(예고)
개요(정의)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 하여 정책사업비 대비 지				
해석 및 특징	자치단체가 일자리와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관련하	하여 지출한	비중을 측정	하는 지표로서
	일자리사업 지출 비율((%) =	일자리사입 	럽 지출액 ── × 10] 결산액	00
산정공식	증감률(%) = 2016회격	연도 201:	지출액-201 5회계연도	5회계연도 지를 집행액	출액 × 100
	* 일자리사업 : 일자리시 * 위 산식은 추후 변경 :		역은 추후	확정	
측정시점(기간)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성질별 세출) 이호조	결산서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관	·심지.	<u>₩</u>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값이 높은 것이 바	람직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출서식	일자리사업 지출비율 : ² 증감률 : 추후 확정	<u> </u>	확정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성질별 세출결산서: 역 ▶정책사업비 결산액		집행액	작성자 (작성부서)	

21.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신규〉

지표분류		재정효율성	되고	내용	참고지표	(예고)
개요(정의)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통해 집행되는 사업비				스민참여예산을
해석 및 특정	ડ્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			결산액의 비	중을 측정하는
		-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u>-</u> (%) = -	주민참여예산 세출 ²	· 사업비 지출 결산액	× 100
산정공식		*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 사업비 총액 * 위 산식은 추후 변경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통해 집행되는
측정시점(기간	<u>'</u> })	2016회계연도 결산		자료산출 (외부통계)	세출결산서 이호조	
지표특징		거시/미시: 거시적 지표 특성 : 일반지표, 주민		-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	•	지표값이 높은 것이 비	남직			
대상회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			
					(단위: 백만원)
제출서식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출액(A)	세측	출결산액(B)		E-武(%) 3) X 100
		직접입력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연락처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세출결산서: 주민참▶정책사업비 결산액) 업 지출액	작성자 (작성부서)	

【 부록】 가중치 조정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시뮬레이션

소위 등급 학원 수의 등급 전원 수의 등급 조용성 수의 등급 조용성 수의 등급 조용성 수의 등급 조용성 수의 수의 <t< th=""><th></th><th></th><th>2(</th><th>2016년 지</th><th>장</th><th>재정분석결과</th><th></th><th></th><th></th><th></th><th>(기준치 :</th><th>2017년 조정 및</th><th>'년 재정분석 시돌 및 재정법령준수</th><th>라 면 면 유</th><th></th><th></th><th>적용 시)</th><th></th></t<>			2(2016년 지	장	재정분석결과					(기준치 :	2017년 조정 및	'년 재정분석 시돌 및 재정법령준수	라 면 면 유			적용 시)	
4 H 395.5 7 H 797.7 3 H 422.5 3 H 389.2 3 5 H 406.3 4 H 782.4 5 H 390.4 2 7 H 306.5 5 H 782.4 6 H 395 5 H 390.4 2 8 H 409.2 2 7 717.7 7 H 322.5 8 H 403.2 1 9 H 390.8 6 H 789.9 4 H 415 4 H 367.9 7 1 7 406.5 3 H 828.4 2 7 442.5 2 7 389.9 5 2 7 406.5 3 H 838.1 1 7 442.5 2 7 389.9 2 8 H 369.1 9 H 688.9	순위 등급	문을		건전성	순위	문을			근무	충점	순위	문을		순위	문을	효율성		연되
5 H 406.3 H 782.4 S H 395 S H 390.4 Z 7 H 396.5 S H 788.4 6 H 395 S H 381.4 6 8 H 409.2 Z H 717.7 T H 322.5 S H 403.2 1 8 H 370.5 S H 706 S H 415. T H 403.2 1 2 H 370.5 S H 706 S H 415.5 T H 367.9 S S H 403.2 T 1 442.5 Z H 442.5 Z H 367.9 S S H 367.9 S H	4 4	7		404.5	4	ナ	395.5	7	古	7.797.7	3	ナ	422.5	3	ナ	389.2	3	7
8 H 496.5 F H 358.4 F H 358.5 F H 358.4 F H 359.5 F H 403.2 T 403.5 F 403.8 F	5 4	4		371.5	5	4	406.3	4	7	782.4	5	4	395	5	4	390.4	2	7}
8 다 409.2 2 7 717.7 7 다 322.5 8 다 403.2 1 3 나 370.5 8 다 776 8 다 345 7 다 367.9 8 2 나 395.8 6 나 789.9 4 나 415 4 나 377.9 7 1 가 406.5 3 나 838.1 1 가 442.5 2 가 442.5 7 가 388.9 5 6 나 390.8 6 나 736.5 5 나 442.5 7 가 388.9 5 8 나 390.8 6 나 736.5 6 나 382.5 6 나 389.9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h 9	7		351	7	古	396.5	S	7	758.4	9	7	395	5	7	381.4	9	7
6 H 370.5 8 H 706 8 H 345 7 H 367.9 8 H 415 H H 377.9 7 2 H 395.8 6 H 789.9 4 H 415 1 H 377.9 7 1 H 409.7 1 H 828.4 2 H 442.5 2 H H 377.9 7 1 H 406.5 3 H 838.1 1 H 455 1 H 388.9 5 H 382.5 6 H 382.5 7 H 382.5 8 H 403.8 8	ъ В	古		296	∞	立	409.2	7	7	717.7	7	古	322.5	∞	古	403.2	-	7
3 H 395.8 6 H 789.9 4 H 415 4 H 377.9 7 2 T 400.7 1 T 828.4 2 T 442.5 2 T 388.9 5 1 T 406.5 3 H 838.1 1 T 455 1 T 389.9 5 6 H 390.8 6 H 736.5 6 H 382.5 6 H 382.5 6 7 H 404.3 2 T 408.9 8 H 337.5 7 H 382.5 6 7 H 404.3 2 T 726.8 6 H 337.5 7 1403.8 2 8 H 395.3 8 H 751.7 3 H 379.7 1 8 H 396.3 9 H 342.5 6	7 4	古	l .	352	9	7	370.5	∞	亡	902	∞	古	345	7	古	367	∞	古
2 7 409.7 1 7 828.4 2 7 442.5 2 7 488.9 5 1 7 406.5 3 4 838.1 1 7 455 1 7 38.9 5 6 4 390.8 6 4 736.5 5 4 360 5 4 382.5 6 8 4 369.1 9 4 698.9 8 4 364.4 9 7 4 404.3 2 7 726.8 6 4 337.5 7 4 403.8 2 3 4 388.8 8 4 751.7 3 4 375 3 4 403.8 2 8 4 396.3 5 4 692.9 9 4 335.9 9 4 395.9 3 8 4 396.3 7 418.7 7	3 4	ナ		405	3	7	395.8	9	ナ	789.9	4	ユ	415	4	ナ	377.9	7	古
1 7 406.5 3 4 838.1 1 7 455 1 7 389.1 4 6 4 390.8 6 4 736.5 5 4 360 5 4 382.5 6 7 4 369.1 9 4 698.9 8 4 364.4 9 7 4 404.3 2 7 756.8 6 4 335.8 8 4 403.8 2 3 4 388.8 8 4 751.7 3 4 375 3 4 403.8 2 8 4 395.3 5 4 692.9 9 4 375.7 3 4 379.7 7 8 4 396.5 3 4 714.9 7 4 395.8 4 4 395.8 4 1 7 389.9 7 4 7 <t< td=""><td>2 7</td><td>7-</td><td></td><td>433</td><td>7</td><td>7</td><td>409.7</td><td>-</td><td>7</td><td>828.4</td><td>2</td><td>7</td><td>442.5</td><td>7</td><td>7-</td><td>388.9</td><td>5</td><td>7</td></t<>	2 7	7-		433	7	7	409.7	-	7	828.4	2	7	442.5	7	7-	388.9	5	7
6 H 390.8 G H 736.5 S H 360 S H 382.5 G 7 H 369.1 G H 337.5 T H 364.4 9 3 H 369.1 G H 337.5 T H 364.4 9 3 H 404.3 Z T 726.8 G H 335.8 G H 364.4 9 3 H 388.8 R H 751.7 3 H 379.7 7 H 379.7 7 8 H 396.3 H 714.9 T H 342.5 G H 395.9 3 1 T 389.9 T 7 H 342.5 G H 395.9 7 2 T 389.9 T 7 H 7 1 7 1 1 1	1 7 4		4	47.5	1	7	406.5	3	7	838.1	1	7-	455	1	7-	389.1	4	7
8 다 369.1 9 다 698.9 8 다 337.5 7 나 364.4 9 7 나 404.3 2 가 726.8 6 나 335 8 나 403.8 2 8 나 388.8 8 나 751.7 3 나 375 3 나 403.8 2 8 나 395.3 5 나 692.9 9 나 330 9 나 395.9 3 5 나 396.3 3 나 714.9 7 나 342.5 6 나 395.4 5 1 가 389.9 7 나 782.8 2 가 395.8 4 2 가 411.5 1 가 780.2 1 7 419.7 1 4 나 396.2 4 나 746 4 나 375 <t< td=""><td>7 4 3</td><td></td><td>3</td><td>37.5</td><td>9</td><td>4</td><td>390.8</td><td>9</td><td>7</td><td>736.5</td><td>5</td><td>4</td><td>360</td><td>5</td><td>4</td><td>382.5</td><td>9</td><td>7</td></t<>	7 4 3		3	37.5	9	4	390.8	9	7	736.5	5	4	360	5	4	382.5	9	7
7 4 404.3 2 7 726.8 6 4 335 8 4 403.8 2 3 4 388.8 8 4 751.7 3 4 375 3 4 379.7 7 8 4 395.3 5 4 692.9 9 4 330 9 4 395.9 3 5 4 396.5 3 4 714.9 7 4 342.5 6 4 395.4 5 1 7 389.9 7 4 782.8 2 7 390. 2 7 395.8 4 2 7 411.5 1 7 7 392.5 1 7 10 7 4 </td <td>9 4 3</td> <td></td> <td>C</td> <td>20.5</td> <td>∞</td> <td>古</td> <td>369.1</td> <td>6</td> <td>古</td> <td>6.869</td> <td>8</td> <td>古</td> <td>337.5</td> <td>7</td> <td>ナ</td> <td>364.4</td> <td>6</td> <td>古</td>	9 4 3		C	20.5	∞	古	369.1	6	古	6.869	8	古	337.5	7	ナ	364.4	6	古
3 H 388.8 8 H 751.7 3 H 375 3 H 379.7 7 8 H 395.3 5 H 692.9 9 H 330 9 H 395.9 3 1 H 396.5 3 H 714.9 7 H 342.5 6 H 395.4 5 1 H 389.9 7 H 782.8 2 7 390 2 7 395.8 4 2 H 411.5 H 746 H H 375 3 H 419.7 1 4 H H 746 H H 375 3 H 377 8	5 H	т		328	7	4	404.3	2	7}	726.8	9	4	335	8	口	403.8	2	7}
8 다 395.3 5 나 692.9 9 다 330 9 다 330 9 다 395.9 3 1 가 396.5 3 나 714.9 7 나 342.5 6 나 395.4 5 1 가 389.9 7 나 782.8 2 가 390 2 가 395.8 4 2 가 411.5 1 가 809.2 1 가 392.5 1 가 419.7 1 4 나 396.2 4 나 746 4 나 375 3 나 377 8	4 H	4		347	3	7	388.8	8	亡	751.7	3	7	375	3	7	379.7	7	4
5 H 396.5 3 H 714.9 7 H 342.5 6 H 395.4 5 1 T 389.9 T H 782.8 T T 390.2 T 395.8 4 2 T 411.5 T 809.2 T T 392.5 T 419.7 T 4 T 396.2 T T 4 T 375 T 377 8	8 4 3		ϵ 0	20.5	8	口口	395.3	5	4	692.9	6	口口	330	6	口	395.9	3	7
1 7 389.9 7 4 782.8 2 7 390. 2 7 395.8 4 2 7 411.5 1 7 809.2 1 7 392.5 1 7 419.7 1 4 7 <	り り	7		339	5	7	396.5	3	4	714.9	7	7	342.5	9	7	395.4	5	4
2 7+ 411.5 1 7+ 809.2 1 7+ 392.5 1 7+ 419.7 1 4 4+ 4+ 746 4+ 4+ 375 3 4+ 377 8	2 7			390.5	1	7	389.9	7	ナ	782.8	2	7	390	2	7	395.8	4	7
4 H 396.2 4 H 746 4 H 375 3 H 377 8	1 7	7}		379	2	7}	411.5	1	7}	809.2	1	7	392.5	1	7}	419.7	1	7}
	3 4		\	342.5	4	7	396.2	4	7	746	4	ナ	375	3	ナ	377	8	亡

	- F	(기 종 치	1/1	2017년 조정 및	재정분석 시뮬 재정법령준수	네 시돌 경주수	시뮬레이션 2수 조정안	<u>사</u>	(آکر
1 가 384.24 2 가 394.99 14 나 경보 2 가 374.21 14 나 398.51 6 가 경기 3 가 380.89 4 가 390.44 25 다 경기 4 가 380.35 6 가 380.76 30 다 경기 5 가 378.07 8 나 391.26 21 나 경기 6 가 378.03 10 나 391.26 21 나 경기 7 가 378.03 10 나 390.93 23 다 경기 8 나 378.03 11 나 377.81 44 다 경기 10 나 368.91 17 나 397.81 44 다 경기 66 라 328.10 10 393.52 18 나 정기 66 라 328.10 10 393.52 18 나 정기 66 라 328.31 60 라 389.68 31 다 정부 69 마 312.28 67 라 389.68 35 다 전부 71 마 323.41 72 </td <td></td> <td>冬石</td> <td>사 유</td> <td>피기 이니</td> <td>건전성</td> <td>字 守 守</td> <td>효율성</td> <td>사 유</td> <td>피 이니</td>		冬石	사 유	피기 이니	건전성	字 守 守	효율성	사 유	피 이니
2 가 374.21 14 나 398.51 6 가 30.84 25 다 30.44 25 다 30.87 30 다 30.87 30 다 30.89 4 가 380.35 6 가 380.76 30 다 30.97 30 10 다 30.97 30 10 10 30 1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30 10 <	7	774.68	1	7	390.83	9 4	- 383.85	∞	7
3 가 380.89 4 가 390.44 25 다 340.45 6 가 380.35 6 가 380.35 6 가 380.35 6 가 380.35 6 가 381.93 65 라 387.75 1 가 381.93 65 라 387.75 1 가 381.93 65 라 340.93 1 나 340.93 1 1 나 340.93 1	7	1 773.69	2	7	392.38	<i>4∠</i> 9	- 387.32	8	7
4 가 380.35 6 가 389.76 30 다 391.66 21 나 378.77 8 나 391.26 21 나 378.77 1 가 381.93 65 다 378.77 1 가 378.03 10 나 380.93 23 다 37 1 가 378.03 10 나 387.81 44 다 37 1 가 378.03 11 나 37.03 1 나 37.03	古	1 772.26	3	7	407.63	1 7	- 370.63	\$ 58	古
5 가 378.77 8 나 391.26 21 나 경기 6 가 387.75 1 가 381.93 65 라 경기 7 가 378.03 10 나 390.93 23 다 경기 8 나 378.27 9 나 387.92 43 다 경기 9 나 378.91 17 나 395.38 11 나 경기 65 라 328.1 70 마 393.52 18 나 정기 66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취 67 라 340.24 62 라 383.75 58 라 충취 68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취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掛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취 72 마 330.98 68 마 379.83 71 마 34 73 마 312.09 73 마 389.13 46 다 전취 73 마 312.07 <	古	1 765.36	4	7-	390.67	10 叶	- 374.7	39	力
6 가 387.75 1 가 381.93 65 라 경기 8 나 378.03 10 나 390.93 23 다 경기 8 나 378.27 9 나 387.81 44 다 경기 10 나 368.91 17 나 395.38 11 나 경기 65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복 66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복 67 라 340.24 62 라 383.75 58 라 충남 68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복 69 마 331.28 67 라 384.18 56 라 전남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10.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3 마 310.02 74 마 388.18 74 전북	7	1 765.33	S	7	387.16	16 叶	- 384.17	7	7
8 나 378.03 10 나 390.93 23 다 경기 8 나 378.27 9 나 387.81 44 다 경기 9 나 377.08 11 나 387.92 43 다 경기 10 나 368.91 17 나 395.38 11 나 경기 65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복 66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복 67 라 340.24 62 라 383.75 58 라 충남 68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복 69 마 331.28 67 라 384.18 56 라 전남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10.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02 74 마 388.13 71 마 강원	市	1 765.3	9	7	391.53	* *	- 373.77	7 45	寸
8 나 378.27 9 나 387.81 44 다 경기 10 나 368.91 17 나 395.38 11 나 경기 10 나 368.91 17 나 395.38 11 나 경기 10 나 368.91 17 나 395.38 11 나 경기 10 나 340.24 62 라 383.75 58 라 충남 69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북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27 74 마 388.13 74 다 전북 74 마 310.27 74 마 388.13 74 다 전북 75 마 310.20 75 마 388.13 74 다 전북 75 마 388.13 74 만	古	i 765.21	7	7	389.02	13 4	- 379.18	3 15	7
9 나 377.08 11 나 395.38 11 나 경기 65 라 328.1 70 마 393.52 18 나 전부 66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부 67 라 340.24 62 라 383.75 58 라 충남 68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부 69 마 331.28 67 라 384.18 56 라 전남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10.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3 마 312.09 73 마 388.13 40 다 전북	ヰ	.2] 764.59	∞	7	395	3 7	- 374.59	42	寸
65 라 328.1 70 마 395.28 11 나 경치 66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북 67 라 340.24 62 라 383.75 58 라 충남 68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북 70 마 333.2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10.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72 74 마 388.13 40 다 전북	カ	1 764.33	6	7	392.69	5 7	7} 374.65	5 41	乜
66 라 328.09 71 마 393.52 18 나 전부 66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부 68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부 69 마 331.28 67 라 384.18 56 라 전남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30.98 68 마 379.83 71 마 강원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07 74 마 388.13 40 다 전북	ħ	764.14	10	7	380.46 2	29 다	- 383.69	6 (ħ
66 라 328.09 71 마 391.02 22 나 충북 67 라 340.24 62 라 383.75 58 라 충남 68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북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30.98 68 마 379.83 71 마 강원 73 마 312.09 73 마 388.34 46 다 전북 74 마 310.27 74 마 388.13 46 다 전북	ナ	725.39	9	古	375.69 3	39 다	- 370.71	57	亡
67 라 340.24 62 라 383.75 58 라 충남 68 마 328.31 69 마 389.68 31 다 경북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30.98 68 마 379.83 71 마 강원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27 74 마 388.13 46 다 전북	4	724.54	99	市	364.78 5	12 85	- 368.76	64	뉟
69 叶 328.31 69 叶 389.68 31 叶 34号 69 叶 331.28 67 中 384.18 56 라 전남 70 叶 333.5 66 中 380.62 70 叶 전남 71 叶 323.41 72 叶 388.88 35 叶 전培 72 叶 330.98 68 叶 379.83 71 叶 78号 73 叶 310.29 73 叶 387.34 46 叶 전培 74 叶 310.27 74 叶 388.13 46 叶 전培	亡	1 722	29	亡	351.44 7	71 마	- 375.56	32	力
69 마 331.28 67 라 384.18 56 라 전남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30.98 68 마 379.83 71 마 강원 73 마 310.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22 74 마 388.13 46 다 전북	古	721.13	89	巾	345.89 7	73 п}	- 375.24	1 35	力
70 마 333.5 66 라 380.62 70 마 전남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30.98 68 마 379.83 71 마 강원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27 74 마 388.13 46 다 전북	亡	719.41	69	巾	358.56 6	67 라	- 375.85	5 29	力
71 마 323.41 72 마 388.88 35 다 전북 72 마 330.98 68 마 379.83 71 마 강원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22 74 마 388.13 46 다 전북	口	717.04	02	巾	357.05 6	 □ 89	- 371.99	51	乜
72 마 330.98 68 마 379.83 71 마 강원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74 마 310.22 74 마 388.13 40 다 전북	力	1 707.59	71	巾	356.49 6	- п 69	- 372.1	50	乜
73 마 312.09 73 마 387.34 46 다 전북	巾	707.15	72	마	341.13 7	74 ¤F	- 369.02	62	뉟
74 中1 310 22 74 中1 388 13 40 中1 漫員	亡	697.92	73	占	353.33 7	70 п	- 371.59	54	市
/4) 다 전북 의산시	689.24	74	巾	п} 346.64 7	72 ¤F	- 371.6	53	뉴

] ; ;			20	2016년 재지	재정분석결과	AL AL	市			; ;		(가중치		2017년 조정 및	년 재정분석 시뮬 및 재정법령준수	とを	量个	시뮬레이션 5수 조정안 적	を	ك
<u> </u>	秦 西	사 유	파 이미	건전성	사 유	피 이니	효율성	사 유	피 에니	<u> </u>	<u> </u>	各石	사 유	파 에	건전성	사 유	띠기이니		사 유	피기 이니
대구 달성군	780.85	1	7}	380.71	3	7	400.14	3	7	대구 달	달성군	780.57	-	7}	406.44	1	7	385.13	3	7
강원 양구군	771.48	2	7}	377.7	7	7	393.78	14	7	경북 울	울진군	772.96	2	7	393.34	5	7	379.63	14	7
경남 남해군	770.97	3	7	378.9	v	7	392.07	23	ナ	경다	남해군	771.1	3	7	386.64	13	7	384.46	4	7
울산 울주군	770.16	4	7	382.72	-	7	387.44	48	古	강원양	양구조	768.45	4	7	395.14	3	7	376.31	32	古
강원 정선군	8.697	S	7	373	16	7	396.8	7	7	경부율	봉화군	767.32	S	7	392.51	7	7	374.81	46	古
경남 의령군	769.51	9	7	381.92	7	7	387.59	46	古	울산 율	울주군	765.18	9	7	395.69	7	7	374.48	49	古
부산 기장군	768.16	7	7}	365.32	28	古	402.84	1	7	경기 역	연천군	761.83	7	7}	388.63	11	7	373.2	55	古
경남 창녕군	765.52	8	7}	377.3	8	7	388.21	43	古	강원 정	정선군	761.69	∞	7}	382.38	27	古	379.31	17	7
경기 연천군	765.32	6	7	376.66	10	7	388.66	39	古	인천 2	강화군	761.48	6	7	383.08	24	7	381.4	6	7
강원 철원군	292	10	4	373.2	15	4	391.8	24	4	부산 7	기장군	760.3	10	4	36.698	69	뉴	390.33	1	7}
전남 영광군	717.7	73	立	339.61	99	市	378.09	9/	中	전남 1	보성군	724.56	73	市	385.21	16	7	371.35	29	古
전남 진도군	715.86	74	늄	327.56	75	늄	388.3	41	力	정남 정	장총군	721.99	74	늄	366.83	64	뉴	373.16	99	古
충남 부여군	713.32	75	늄	323.3	77	1	390.01	32	口	을 남冬	근율을	718.07	75	늄	358.16	73	나	374.91	44	古
전북 완주군	709.44	92	п}	329.06	74	늄	380.38	72	늄	전남 신	신안군	710.2	92	마	363.59	29	라	366.62	77	마
전남 완도군	708.51	77	ㅁ	334.39	69	亡	374.13	81	巾	전북 고	고창군	710.19	77	中	362.96	89	市	371.22	89	立
전남 강진군	708.51	78	1	321.54	78	巾	386.98	50	力	전북 온	왕주군	707.77	78	巾	360.24	70	뉴	368.53	75	中
충북 진천군	68.707	79	$\neg \vdash$	317.16	80	巾	390.74	30	力	전남 온	공조공	704	79	마	353.09	77	마	368.92	74	中
전남 신안군	699.45	80	마	318.7	79	巾	380.75	71	宁	충북 진	진천군	703.75	80	마	340.55	81	마	378.21	26	廿
전남 장흥군	695.57	81	巾	314.56	81	巾	381.01	89	市	경북 출	칠곡군	701.35	81	마	333.79	82	占	375.56	37	廿
경북 칠곡군	691.24	82	마	299.52	82	巾	391.72	25	7	전남 2	강진군	700.97	82	巾	346.09	62	古	п} 369.88	69	亡

2016년 재정분석결과				정분석결과	석결과	古				古界	(가중치	171	2017년 8정 및	1 재정분석 시뮬 대정법령준수	사 상 사	事个	시뮬레이션 증수 조정안 3	<u>용</u>	<u>신</u>
다 <u>솔</u> 6	총점	사 유	파기 이니	건전성	수 유	피기에	효율성	수 유	파기 에니	다 <u>수</u> 5	총점	수 유	파 이	건전성	사 유	파 이니	효율성	수 유	파 이미
	783	1	7	390.8	7	7	392.2	18	ナ	인천 연수구	780.26	1	7	406.42	1	7	373.84	48	廿
연수구	776.65	7	7	398.52	1	7	378.13	9	中	서울 중구	774.28	2	7}	397.96	7	7	376.31	33	古
무울무	774.4	3	7	382.76	3	7	391.64	20	7	서울 강동구	768.01	3	7}	392.54	3	7	375.47	40	古
강동구	772.86	4	7	381.56	4	7	391.29	22	古	서울 동작구	767.52	4	7	391.9	4	7	378.62	15	7
동래구	771.94	S	7	7} 378.61	9	7	393.33	11	7	부산 동래구	766.26	S	7	383.31	19	7	382.96	_	7
진구	767.35	9	7	374.67	13	7	392.68	13	7	서울 중랑구	765.71	9	7	387.63	6	7	381.08	9	7
광진구	76.997	7	7	374.7	12	7	392.27	15	7	인천 남동구	765.52	7	7}	387.69	~	7	377.83	20	7
서구	766.56	8	7	377.42	6	7	389.15	33	古	부산 진구	763.66	8	4	383.79	17	7	379.87	8	7
구무	765.71	6	7	1378.87	5	7	386.84	42	古	내구 남구	762.02	6	7	389.56	9	7	377.46	22	古
서초구	764.65	10	7	370.98	18	4	393.68	8	4	대전 서구	761.09	10	Ч	384.28	15	7	376.81	29	廿
사하구	737.17	9	亡	347.27	99	п}	389.9	26	口口	광주 광산구	734.44	9	古	370.49	51	수	363.95	69	마
광주 북구	737.14	61	늄	356.91	90	市	380.23	63	巾	나누 부가	730.48	61	늄	362.25	61	古	371.23	57	古
해운대구	735.91	62	늄	353.35	57	뉴	382.56	09	라	부산 해운대구	729.9	62	늄	364.55	88	뉴	370.35	09	市
부산 동구	733.04	63	巾	347.41	69	巾	385.63	51	늄	인천 계양구	729.85	63	$\frac{1}{2}$	359.75	64	巾	373.1	54	市
계양구	732.54	64	巾	350.13	62	뉴	387.41	40	廿	광주 북구	729.66	64	վп	360.1	63	巾	369.56	62	古
	730.38	65	巾	347.03	29	山	383.36	99	뉴	울산 동구	729.45	9	ηп	355.74	9	巾	373.71	51	古
	727.04	99	口	347.96	64	巾	379.07	64	巾	광주 서구	719.29	99	$\frac{1}{2}$	354.64	99	巾	364.65	89	마
서구	726.77	29	巾	351.21	09	市	375.56	89	마	광주 동구	717.75	67	마	352.99	29	巾	367.76	65	마
十十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	709.64	89	巾	319.54	89	巾	390.1	24	古	인천 부평구	716.2	89	Π^{1}	342.4	89	마	373.8	49	宁
운소	708.67	69	巾	316.03	69	巾	392.64	14	ナ	대전 동구	714.04	69	巾	331.2	69	ㅁ	382.85	7	7